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 국문 번역본

2025년 1월 기준

IPC Classification Code & International Standards
(Version 1 January 2025)

IPC 등급분류 규약 p1~70

IPC 등급분류 국제표준

1. 등급분류 인력과 교육에 대한 국제표준 p71~88
 2.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 p89~108
 3.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 . . . p109~116
-

등급분류 규약

p1~70

IPC CLASSIFICATION CODE &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1 JANUARY 2025)

목차

서문 (INTRODUCTION)	1
제1장 : 등급분류의 목적 및 등급분류 규약의 범위 (CHAPTER 1: PURPOSE OF CLASSIFICATION AND SCOPE OF THE CLASSIFICATION CODE	3
1. 등급분류의 목적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5
2. 등급분류 규약 및 지원 틀 (The Classification Code and supporting framework)	5
3. 등급분류 규약의 범위 및 적용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Code)	6
4.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Para' 상표권 사용 (Use of the IPC's 'Para' mark)	7
제2장: 등급분류 (CLASSIFICATION)	9
제1부: 소개 (Introduction)	11
5. 기본 원칙 (Principles)	11
제2부: 선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 (Bodies for classifying Athletes)	12
6.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UHC Assessor)	12
7. 등급분류 패널 (Classification Panel)	13
제3부: 적격 장애 (Eligible Impairments)	14
8. 적격 장애 (Eligible Impairments)	14
9. 부적격 장애 (Non-Eligible Impairments)	15
10. 적격 장애의 근거 (Rationale for Eligible Impairments)	16
제4부: 등급분류 절차 (The Classification process)	17
A. 1단계: 기저 건강상태 평가 (UHC Assessment)	17
11. 진단 정보 (Diagnostic Information)	17
12. 기저 건강상태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UHC Assessment)	17
13.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UHC')	19
B. 평가 세션 (Evaluation Session)	19
B.1. 2단계: 적격 장애 평가 (Eligible Impairment Assessment)	19

14. 적격 장애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Eligible Impairment Assessment)	19
15. '부적격-적격 장애'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Eligible Impairment')	21
B.2. 3단계: 최소장애기준 평가 (MIC Assessment)	22
16. 최소장애기준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MIC Assessment)	22
17. '부적격-최소장애기준'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MIC')	23
B.3. 4단계: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부여 (Sport Class and Sport Class Status allocation)	24
B.3.1 스포츠 등급 (Sport Class)	24
18. 스포츠 등급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Sport Class Assessment)	24
19. 다수의 스포츠 등급 자격 (Eligibility for multiple Sport Classes)	27
B.3.2 스포츠 등급 상태 (Sport Class Status)	28
20. 스포츠 등급 상태 (Sport Class Statuses)	28
21. 스포츠 등급 상태 배정 (Allocation of Sport Class Statuses)	28
22. 스포츠 등급 상태가 공인 대회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port Class Status on participation in Covered Competitions)	30
23. 국제연맹(협회)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31
24. 평가 세션 참석 (Attendance at Evaluation Sessions)	31
25. 평가 세션과 관련한 국가연맹(협회) 및 선수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Federations and Athletes in relation to Evaluation Sessions)	32
26. 평가 세션과 관련한 등급분류 패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the Classification Panel in relation to Evaluation Sessions)	33
27. 이전 등급분류 평가 세션에 대한 고려 사항 (Consideration of prior Evaluation Sessions)	33
28. 추가 정보 또는 전문 지식에 대한 등급분류 패널 요청 (Classification Panel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expertise)	33
29. 평가 세션의 이전 단계 재실행 요구 사항 (Requirement to redo prior stages of the Evaluation Session)	34
30. 평가 세션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an Evaluation Session)	34
31. 평가 세션 불참 (Failure to attend an Evaluation Session)	35
32. '등급분류 미완료(CNC)' 지정 (Designation of '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	36
33. 평가 세션 장소 (Location of Evaluation Sessions)	36
34. 사진 및 시청각 기술 (Photographs and audio-visual technology)	37
제5부: 알림 및 공지 (Notification and publication)	37
35. 등급분류 결과 알림 (No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utcome)	37
36.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Classification Master List)	37

제6부: 상황의 변화 (Change in circumstances) 38

37. 의학(적) 재검 (Medical Review) 38

제7부: 경기 구성 방식 (Competition formats) 39

38. 복합 등급 경기 (Combined Class Events) 39

39. 경기력 보상 체계 (Performance compensation mechanisms) 40

제3장: 항의 및 항소 (PROTESTS AND APPEALS) 43

제1부: 개요 (Overview) 45

40. 개요 (Overview) 45

제2부: 항의 (Protests) 45

41. 항의의 범위 (Scope of Protests) 45

42. 항의 권한이 있는 당사자 (Parties permitted to make a Protest) 45

43. 국가연맹(협회) 항의 (National Federation Protest) 45

44. 국제연맹(협회) 항의 (International Federation Protest) 47

45. 항의 패널 절차 (Protest Panel procedures) 47

46. 항의 패널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Circumstances where a Protest Panel is not available) ... 48

제3부: 항소 (Appeals) 49

47. 항소 범위 (Scope of Appeals) 49

48. 항소 제출 (Making an Appeal) 49

49. 항소 기구 (Appeal Body) 49

50. 항소 결정 (Appeal decision) 50

제4장: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51

51.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53

**제5장: 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
(CHANGES TO CLASSIFICATION SYSTEMS) 55**

52. 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 (Changes to Classification systems) 57

제6장: 역할과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59

53. 개요 (Overview) 61
54.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61
55. 국제연맹(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s) 61
56. 국가패럴림픽위원회 (NPCs) 62
57. 등급분류 인력 (Classification Personnel) 62
58. 선수 (Athletes) 63
59. 선수지원 인력 (Athlete Support Personnel) 63
60. 기타 참가자 (Other Participants) 64

**제7장: 데이터, 모범 사례 등급분류 및 연구
(DATA, BEST PRACTICE CLASSIFICATION, AND RESEARCH) 65**

61. 데이터 (Data) 67
62. 모범 사례 등급분류 (Best Practice Classification) 67
63. 등급분류 연구 (Classification Research) 67

**제8장: 등급분류 규약의 준수
(COMPLIANCE WITH THE CLASSIFICATION CODE) 69**

64.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의 준수 (Compliance by IPC Members) 71
65.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준수 (Compliance by RIFs) 71
66.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71

**제9장: 등급분류 규약 유효일자, 개정 사항 및 해석
(CLASSIFICATION CODE EFFECTIVEDATE, AMENDMENTS,
AND INTERPRETATION) 73**

67. 등급분류 규약의 유효일자 (Effective Date of the Classification Code) 75
68. 등급분류 규약의 개정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Code) 75
69. 국제표준의 개정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75
70. 추가규정 (Supplementary regulations) 75
71. 해석 (Interpretation) 75

용어정의 (DEFINITIONS) 77

서문 (INTRODUCTION)

등급분류 규약의 핵심적인 근거

등급분류는 장애인 스포츠가 시작된 이래로 핵심적인 기본 토대였으며, 선수의 장애 자체가 시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의미 있는 시합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는 적격한 선수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해 왔다.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패럴림픽 무브먼트를 이끌고, 패럴림픽 대회 개최를 감독하며,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들을 지원하는 사명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등급분류 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한 경쟁 스포츠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들로 하여금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 독특한 틀은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합 결과가 스포츠 우수성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에게 스포츠 등급을 부여하여 그룹화한다.

또한 개념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은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려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더 넓은 비전을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의 독특한 기여는, 단순한 참여에 의미를 두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이 스포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경쟁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뛰어난 스포츠를 전 세계 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시성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삶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포츠 이외의 분야를 포함한 영역에서 무엇이 가능할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은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어떤 장애인스포츠 종목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의도된 것도 아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은 장애인들끼리 (참여 자체의 의의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경쟁이 가능한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틀은 누가 장애인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참가할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개별적인 기관들이 본 등급분류 규약에 따른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이러한 각 조직의 노력들이,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위한 공동 비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경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합의되고 통일된 원칙이 없었다. 등급분류 정책 및 절차는 표준화 되지 않았고, 종목이나 연맹(협회)별로 개별적인 방침들이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등급분류 시스템이 개발되는 속도와 등급분류 시스템의 질은 스포츠 종목마다 차이가 있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사회는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대한 보다 일치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2003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사회는 등급분류 시스템 개발 전략을 승인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2007년 등급분류 규약 초판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후에 등급분류 규약 제 2판은 2015년에 채택되었다. 2007년 및 2015년 등급분류 규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장애인 스포츠에서 등급분류가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수, 코치, 관리자, 대중, 미디어를 포함한 패럴림픽 이해 관계자들이 등급분류 절차와 그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5년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개정되는 등급분류 규약은 이전의 발표된 규약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등급분류 규약에 대한 3년간의 광범위한 리뷰 과정을 거쳤으며,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들과의 공개 자문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급분류 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 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급분류 항소 심사위원회, 등급분류사, 인권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했다.

발행자 :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Dahlmannstraße 2 53113 본 독일

URL: www.paralympic.org

이메일: info@paralympic.org | 전화: + 49-228-2097-200 | 팩스: + 49-228-2097-209

제 1 장

등급분류의 목적 및 등급분류 규약의 범위

CHAPTER 1 : PURPOSE OF CLASSIFICATION AND SCOPE
OF THE CLASSIFICATION CODE

1. 등급분류의 목적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 1.1. 등급분류의 목적은 적격 장애가 있는 선수가 스포츠 우수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스포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정점은 패럴림픽 대회이다.
 - 1.2. 등급분류는 선수의 장애¹⁾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그 결과가 장애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는 고유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등급분류는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필수적이며, 등급분류 없이는 장애인 스포츠가 존재할 수 없다.
 - 1.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급분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1.1.1. 장애인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를 결정한다.
 - 1.1.2. 장애가 해당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동작 및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적격한 운동선수를 스포츠 등급별로 그룹화한다.
 - 1.4.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은 선수의 스포츠 경기력에 따라 선수의 등급이 정해지도록 설계 되어 있지 않는다.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선수의 장애 정도이며, 해당 장애가 특정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동작을 수행하는 선수의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선수가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면 자신이 배정받은 스포츠 등급 내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향상된 경기력 그 자체만으로 선수의 스포츠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다.
2. 등급분류 규약 및 지원 틀 (The Classification Code and supporting framework)
 - 1.5. 등급분류 규약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등급분류에 기반이 되는 기본 문서이며,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대한 효과적인 등급분류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러한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동기화를 고려하여 항목들을 구체화하였고, 유연한 적용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일반론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 1.6. 등급분류 규약에 대한 보완 사항 :
 - 1.1.3. 다음의 '국제표준'들은 등급분류 규약의 실행 및 실제 적용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과 지침을 설정한다. :
 - 1.1.1.1. 등급분류 인력 및 교육에 대한 국제표준
 - 1.1.1.2.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
 - 1.1.1.3.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

1) 제1.2항에 대한 주석: '장애'라는 용어는 신체 구조 또는 생리적 기능(정신적 기능 포함)의 상실 또는 이상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이란 확립된 통계적 표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뜻하므로 (즉, 전체 인구에서 측정된 표준 범위 내의 평균값과의 편차를 의미), 이러한 의미에 국한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장애의 예로는 팔이나 다리의 손실, 시력의 손실 등이 있다. 척추 손상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마비가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1.1.4. 등급분류 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적 모델인 직제표
- 1.1.5. 등급분류 규약의 실행과 관련된 모범 사례 및 지침
- 3. 등급분류 규약의 범위 및 적용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Code)
- 1.7. 모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및 공인 국제연맹(협회)들은 다음 조건에 따라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 1.1.6. 국제연맹(협회)은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된 종목에 대해서만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연맹 (협회)은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 외의 종목에도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 1.1.7. 각 공인 국제연맹(협회)은 적어도 관리하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종목에 관해서는, 등급분류 규약 또는 국제표준에서 (i) 국제연맹(협회)을 언급하는 경우 공인 국제연맹(협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ii) 국가연맹(협회)을 언급하는 경우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국가 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관련 조항들도 이에 맞춰 해석된다.
- 1.8.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은 대회들에 적용된다.
 - 1.1.8. 패럴림픽 대회
 - 1.1.9. 세계 선수권 대회
 - 1.1.10. 관련 국제연맹(협회)이 패럴림픽 대회 진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한 모든 경기들
 - 1.1.11. 등급분류 절차의 일환으로 관찰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모든 경기
 - 1.1.12.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 규약에 명시한 기타 모든 이벤트 또는 경기
 국제연맹(협회)은 기타 다른 대회(예: 하위 수준 대회)에도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 1.9.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의 모든 조항은 본질적으로 의무적이다.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의 일부 조항들은, 각 국제연맹(협회)이 실질적인 변경 없이 자신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조항들은 각 국제연맹(협회)이 규정을 제정할 때 유연성을 허용하는 일반론적인 지침 원칙을 설정하거나, 각 국제연맹(협회)이 따라야 하지만 자체 규정에서 반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도 설정한다.
- 1.10.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1.13. 패럴림픽 무브먼트는 등급분류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구현한다.

- 1.1.14. 가능한 최고 수준의 등급분류 표준이 모든 장애인 스포츠에 적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 이외의, 또는 보다 하위 수준 대회나 종목에 대한 참여 및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Para' 상표권 사용 (Use of the IPC's 'Para' mark)
 - 1.11. 'Para'라는 단어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등록 상표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이익을 위해 등록 상표권을 보호한다. 'Para' 마크의 사용은 정관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지적 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1.12. 'Para'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는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국제연맹(협회)과 공인 국제연맹(협회)에 부여된다. 다만 국제연맹(협회) 및 공인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특정 스포츠 및 종목과 관련해서만 'Para'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 1.13.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 국제연맹(협회)이 아닌 스포츠 및 연맹(협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Para'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등급분류 CLASSIFICATION

제1부: 소개 (Introduction)

5. 기본 원칙 (Principles)

등급분류 단계

5.1. 등급분류는 네 가지 주요 평가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국제연맹(협회)(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해야 한다.

기저 건강상태 평가	1단계: 선수가 속한 국가연맹(협회)이 제공한 진단 정보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검토해서 선수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제4부 A 참조).
평가 세션	2단계: (i) 선수에게 해당 종목에 부합하는 적격 장애가 있으며, 이는 기저 건강상태 평가에 보고된 한 가지 이상의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는지, (ii) 보고된 기저 건강상태와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적격 장애 평가)(제4부 B.1 참조).
	3단계: 선수의 적격 장애가 관련 종목 내에서 적격 장애에 대한 최소 장애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최소장애기준 평가)(제4부 B.2 참조).
	4단계: 선수에게 다음을 부여 (i) 스포츠 등급은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의 기본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스포츠 등급을 부여한다. (ii) 스포츠 등급 상태는 선수가 향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를 나타낸다. (제4부 B.3 참조).

등급분류 단계 순서

5.2. 기저 건강상태 평가는 항상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단, 평가 자체는 국제연맹(협회)에서 정해놓은 대로, 어떤 순서로든 수행하거나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 절차는 여전히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4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의 기본 요구 사항

5.3. 모든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등급분류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아래의 등급분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5.3.1. 제1조에 명시된 등급분류의 목적을 명시한다.
- 5.3.2. 제3조 2항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 5.3.3. 등급분류 규정이 최소한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i) 국제연맹(협회)과 그 대표, (ii) 각 국가연맹(협회)과 모든 국가의 대표자, (iii) 모든 참가자, (iv) 모든 등급분류 인력, (v) 평가 세션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vi) 기타 규정 준수에 서면으로 동의한 모든 관계자
- 5.3.4. 본 등급분류 규약에 명시된 4단계의 등급분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5.3.5.²⁾ 해당 종목에서 인정하는 적격 장애를 명시하며, 여기에는 제8조에 나열된 적격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부적격 장애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5.3.6. 각 스포츠에서 다루는 적격 장애(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적격 장애의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최소장애기준을 설정하며, 이 기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 5.3.7. 선수 등급분류를 위한 국제연맹(협회)의 절차 및 방법론을 명시한다.
- 5.3.8. 선수는 자신에게 부여된 스포츠 등급(들)에서만 경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2부: 선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 (Bodies for classifying Athletes)

- 6.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UHC Assessor)
 - 6.1. 국제연맹(협회)은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개인 또는 기관(각각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라고 함)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6.1.1. 직원, 등급분류사 및/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연맹(협회)을 대표 및/또는 대신하여 일하는 관계자 또는 단체 및/또는
 - 6.1.2.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내부 또는 외부 기관.
 - 6.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6.2.1.³⁾ 다음 중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어떤 유형의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수행할

2) 제5.3.5호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종목에서 어떤 적격 장애를 포함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적격 장애를 포괄하는 스포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종목에서는 모든 적격 장애를 가진 선수를 포함하지만(육상, 수영 등), 다른 종목에서는 한가지 적격 장애(유도 등) 또는 일부 적격 장애 (사이클링, 승마 등)에만 기회를 제공한다.

3) 제6.2.1호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단일 적격 장애 유형(예: 신체 장애)에 대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적격 장애 유형(예: 신체 장애 및 시각 장애)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기저 건강상태

책임이 있는지: (i) 지적 장애가 있는 선수, (ii)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 (iii) 시각 장애가 있는 선수.

6.2.2. 기저 건강상태 평가는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수행하는 절차이다.

6.3. 국제연맹(협회)은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로 활동하는 모든 관계자가 (i)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ii) 적절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등급분류 패널 (Classification Panel)

7.1. 국제연맹(협회)은 본 7조에 따라 평가 세션을 수행할 등급분류 패널을 임명해야 한다.

7.2.4) 단, 7.3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7.2.1. 각 등급분류 패널은 최소 두 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7.2.2. 등급분류 패널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평가 대상 선수와 다른 국적이어야 한다.

7.2.3. 등급분류 패널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국적의 회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7.3.5)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대상 선수와 동일한 국적의 단독 등급분류사 및/또는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패널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7.3.1.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대한 지정 상태가 '추후 가능일자 재검 (Review at the Next Available Opportunity, R- NAO)'일 경우

7.3.2. 해당 등급분류사가 평가 세션 내에서 모든 평가를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았을 경우

7.4.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적절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제7.2항에 대한 주석: 이 조항은 잠재적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된 이해상충이든 실제 이해상충이든 상관없다. 이해상충은 등급분류 인력 및 훈련에 대한 국제표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추가 예시도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항의 패널의 구성에 관한 제45.2항에 따라 등급분류 패널은 평가 대상 선수의 이전 평가 세션을 수행한 등급분류사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연맹(협회)은 예상되는 평가 세션 날짜 이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의 평가(국내 또는 국제 수준에서) 또는 평가에 관여했던 등급분류사를 등급분류 목적으로 가급적 임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5) 제7.3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대회에 심각하고 불가피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 상황'(여행 지연, 등급분류사의 질병 또는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2인 이상의 등급분류 패널을 구성할 수 없거나 평가 대상 선수와 다른 국적을 가진 등급분류사의 수가 부족할 수 있다.

제3부: 적격 장애 (Eligible Impairments)

8. 적격 장애 (Eligible Impairments)

8.1. 현재 패럴림픽 무브먼트에는 아래와 같이 7가지의 적격 장애(5가지 '신체 장애유형', '시각 장애', '지적 장애')가 있다:

8.1.1. 신체 장애유형

모든 신체장애는 (i)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에서 비롯되거나 (ii) 근골격계의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다섯 가지 신체장애는 다음과 같다. :

8.1.1.1. 근력 장애

근력 장애가 있는 선수는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 또는 근육의 구조와 기능(근육 기원부위와 근육 부착부위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건강상태에 따라 근육을 수축하여 힘을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없는 상태이다.

8.1.1.2. 수동 관절가동범위 장애

수동 관절가동범위 장애가 있는 선수는 뼈, 관절, 결합 조직 또는 연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건강상태에 따라, 관절에 수동적인 움직임이 가해졌을 때의 가동범위가 감소되어 있다.

8.1.1.3. 사지결손 및/또는 사지 길이 차이

사지결손 또는 사지 길이 차이가 있는 선수는 뼈 및/또는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 질병 또는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기저 건강 상태와 일치하는 사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거나 해부학적으로 불규칙한 사지 길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 적격 장애는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

8.1.1.3.1. 사지결손

8.1.1.3.2. 다리 길이 차이

8.1.1.3.3. 팔 길이 차이

8.1.1.4. 저신장(증)

저신장(증) 선수는 선천적 또는 발달적으로 상지 및 하지 뼈의 길이가 감소한 결과 전체 신체 길이(머리, 몸통, 다리 포함)가 감소한 선수로,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는 경우(몸통 길이도 감소할 수 있음) 저신장(증) 선수로 간주한다. 선수의 전체 신체 길이 감소가 사지 결손 또는 사지 길이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경우에는 저신장(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1.1.5.6) 협동 장애

협동 장애가 있는 선수는 다음 세 가지 운동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i) 모든 범위의 숙련된 동작을 유연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ii) 중추신경계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a) 근긴장항진/경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육 긴장의 증가 및/또는 근육의 스트레칭 능력 감소

(b) 운동실조증: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의 정확도가 제한됨

(c) 이상운동증(무정위운동(증), 근긴장이상(증), 무도병): 자발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불수의적인 움직임

8.1.2. 시각 장애

시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눈, 시신경, 시신경 교차, 교차 후 시각 경로, 또는 뇌의 시각 피질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건강 상태로 인해 최상의 굴절 또는 광학 교정을 사용하더라도 시각 기능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이다.

8.1.3. 지적 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일반적인 정신 기능에 제한을 초래하는 기저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 기능을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지 기능 및 그 발달에 제한이 있다.

9. 부적격 장애 (Non-Eligible Impairments)

9.1. 제8조에 적격 장애로 나열되지 않은 모든 장애는 '부적격 장애'이다.

9.2. 부적격 장애의 예시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2.1. 통증

9.2.2. 청각 장애

9.2.3. 낮은 근긴장도

9.2.4. 관절의 과운동성

6) 제8.1.1.5.목에 대한 주석: 협동이란 숙련된 동작을 유동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Connick et al., 2015 Runciman & Derman, 2018)]

- 9.2.5. 불안정한 어깨 관절 또는 반복되는 관절 탈구와 같은 관절 불안정성
- 9.2.6. 근지구력 손상 또는 뻣뻣함
- 9.2.7. 운동 반사 기능 장애
- 9.2.8. 심혈관 기능 장애
- 9.2.9. 호흡기 기능 장애
- 9.2.10. 신진대사 기능 장애
- 9.2.11. 틱장애와 매너리즘, 운동 상동증, 운동 보속증
- 9.2.12. 전정 장애
- 9.2.13. 근육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피로감
- 9.2.14. 정신적 및/또는 정신 신체화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
- 9.3.7) 적격 장애와 부적격 장애를 모두 가진 선수는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적격 장애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 부적격 장애가 등급분류 패널의 평가 세션(관찰 평가 포함)의 수행 능력이나 스포츠 등급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0. 적격 장애의 근거 (Rationale for Eligible Impairments)
 - 10.1. 적격 장애에는 모든 장애 유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일부였으며 제10.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로 제한된다.
 - 10.2. 적격 장애 목록은 다음 기준을 고려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확대할 수 있다:
 - 10.2.1. 장애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기능, 장애 및 건강에 대한 국제분류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ICF로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에 나열된 장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10.2.2. 장애는 국제질병분류(더 일반적으로 ICD, 즉 질병 및 장애를 분류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세계보건기구 진단 도구)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확인 가능한 건강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 10.2.3. 장애가 하나 이상의 장애인 스포츠에서 활동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 10.2.4. 장애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10.2.5. 장애는 반드시
 - 10.2.5.1. 영구적이어야 하고

7) 제9.3조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골관절염이 있는 선수는 수동 관절가동범위 장애(적격 장애) 및 통증(부적격 장애)이 있을 수 있다. 통증의 존재로 인해 등급분류 패널의 평가 세션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선수는 적격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 10.2.5.2. 등급분류 후에도 일관되게 관찰되어야 한다.
- 10.2.6. 해당 장애를 적격 장애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은 해당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10.2.7.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경쟁 기회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 10.2.8. 장애에 대한 스포츠별 등급분류 체계는 다학제적 등급분류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10.2.9. 종목별 등급분류 시스템은 장애 유형과 해당 장애가 해당 종목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선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근거해야 한다.
- 10.2.10. 장애 유형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방법 및 등급분류 절차는 등급분류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4부: 등급분류 절차 (The Classification process)

A. 1단계: 기저 건강상태 평가 (UHC Assessment)

- 11. 진단 정보 (Diagnostic Information)
 - 11.1. 등급분류 절차를 시작하려면 선수는 국제연맹(협회)이 기저 건강상태 및 적격 장애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진단 정보를 소속 국가연맹(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 11.2.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에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선수가 제공한 모든 진단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본이고 관련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 11.3. 국제연맹(협회)(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포함)은 진단 정보를 포함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11.4. 진단 정보는 국제연맹(협회)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원본 형식(즉, 원본 문서 또는 그 사본)과 함께 영어 번역본(원본 형식이 다른 언어인 경우)으로 제공해야 한다.
- 12. 기저 건강상태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UHC Assessment)
 - 12.1.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제5조 1항에 명시된 목적, 즉 선수가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기저 건강상태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지(또는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 12.2.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제공한 진단 정보만을 바탕으로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 12.3.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 12.3.1.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개별 위원들은 선수의 진단 정보를 처음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12.3.2. 위원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12.4.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선수에게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기저 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고(또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4.1.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평가 결과를 국제연맹(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2.4.2. 국제연맹(협회)은 진단 정보와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서면 결과를 등급분류 패널에 제공한 후 평가 세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 12.4.3. 선수가 관련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선수는 자동으로 '신규(N)' 등급을 배정받게 된다.
 - 12.4.4. '신규(N)'로 지정된 선수는 국제연맹(협회)이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인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에게 등록용 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수 있다.)
- 12.5.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선수에게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기저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 12.5.1.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평가 결과를 국제연맹(협회)에 통보하고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12.5.2. 국제연맹(협회)은 반드시
 - 12.5.2.1.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서면 설명서 사본을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 12.5.2.2. 제13조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술하며 해당 선수를 '부적격-기저 건강상태(재평가)'로 지정한다.
 - 12.5.2.3. 제12.6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기저 건강상태를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12.6. 제12.5.2호에 따라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필요한 경우
 - 12.6.1.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한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구성원은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2.6.2.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제공한 모든 진단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첫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서면 설명도 검토해야 한다.

- 12.6.3.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선수에게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기저 건강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4항이 적용된다.
- 12.6.4.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선수에게 의학적 및/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기저 건강상태가 한 가지 이상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2.6.4.1.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는 국제연맹(협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12.6.4.2. 국제연맹(협회)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두 번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서면 설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12.6.4.3. 해당 선수는 '부적격-기저 건강상태'로 지정되어야 하며, 제13조의 결과가 계속 적용된다.

13. '부적격- 기저 건강상태'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UHC')

- 13.1.⁸⁾ 제37조(의학(적) 재검) 및 제52.3항(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부적격-기저 건강상태(재평가)' 또는 '부적격-기저 건강상태'로 지정된 선수는
 - 13.1.1. 해당 종목의 공인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 13.1.2. (해당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추가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해당 지정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 사항은 해당 종목의 다른 국제연맹 (협회)이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3.2. 제12.6항에 따라, 선수를 '부적격-기저 건강상태(재평가)' 또는 '부적격-기저 건강상태'로 지정하는 것은 재검 또는 항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장의 제3부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13.3.⁹⁾ 국제연맹(협회)은 제36조에 따라 '부적격-기저 건강상태(재평가)' 또는 '부적격-기저 건강상태'로 지정된 모든 선수를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B. 평가 세션 (Evaluation Session)

B.1 2단계: 적격 장애 평가 (Eligible Impairment Assessment)

- 14. 적격 장애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Eligible Impairment Assessment)
 - 14.1. 각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선수의 적격 장애 여부에 대한 등급분류 패널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제13.1항에 대한 주석: '부적격-기저 건강상태(재평가)' 또는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판정을 받은 선수가 이후 (i) 다음 대회에 출전하거나 출전 시도를 하는 경우 또는 (ii) 추가 분류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다른 종목에 대한 등급분류 포함), 각 경우에 해당 지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될 수 있다.
 9) 제13.3항에 대한 주석: 이 요건은 선수가 현재 국제연맹(협회)의 회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14.1.1. 제5.1항에 명시된 목적, 즉 (i) 선수에게 해당 종목이 요구하는 적격 장애가 있으며, 이는 기저 건강상태 평가에 보고된 한 가지 이상의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는지, (ii) 보고된 기저 건강상태와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격 장애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14.1.2. 예비 단계로 등급분류 패널이 기저 건강상태 평가와 관련된 문서인 진단 정보 및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서면 결과와 같은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된다.
- 14.1.3. 각 적격 장애에 대해 평가할 기준과 적격 장애 평가의 일부로 사용될 장애 기반 테스트 및/또는 기타 임상적으로 인정된 테스트의 전체 세부 사항 및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 14.2. 적격 장애 평가는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적 장애의 경우 기저 건강상태 평가의 일부로 제공된 진단 정보의 평가를 기반으로 적격 장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14.3. 적격 장애 평가를 수행할 때, 등급분류 패널이 기저 건강상태 평가에서 보고된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4.3.1. 선수를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한다.
 - 14.3.2. 불일치 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기재한 서면 설명서를 작성하여 국제연맹(협회)과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14.3.3.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그러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국제연맹(협회)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정보는 원본(즉, 원본 문서 또는 그 사본)과 함께 영어 번역본(원본 형식이 다른 언어인 경우)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은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4.3.4. 지정된 기한까지 추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등급분류 패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등급분류 패널이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서면 설명 및 제공된 추가 정보와 함께 전술한 1단계(기저 건강상태 평가)에 따라 재검토를 위해 해당 문제를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능한 이전과 동일한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여야 함)에게 다시 회부한다.
- 14.4. 적격 장애 평가는 해당 등급분류 패널이 제공된 추가 정보에 만족하거나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재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동일 또는 새로운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계속된다.
- 14.5. 적격 장애 평가가 완료되면,
 - 14.5.1. 등급분류 패널이 (i) 선수에게 해당 종목이 요구하는 적격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기저 건강상태 평가에 보고된 한 가지 이상의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며, (ii) 보고된 기저 건강상태가 일관되게 관찰됨이 인정된다면, 최소장애기준 평가로 진행한다.

- 14.5.2.¹⁰⁾ 등급분류 패널이 제14.5.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선수는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로 지정되며, 제 15조의 사항들이 함께 기술 되어야 한다.
- 14.6. 등급분류 패널은 국제연맹(협회)에 적격 장애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패널의 서면 설명서 사본을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 14.7. 선수가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로 지정된 경우, 선수는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로부터 두 번째 적격 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14.7.1. 첫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위원은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14.7.2.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은 첫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서면 설명도 검토해야 한다.
- 14.7.3.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이 (i) 선수에게 해당 종목이 요구하는 적격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기저 건강상태 평가에 보고된 하나 이상의 기저 건강상태와 일치하며, (ii) 보고된 기저 건강상태가 일관되게 관찰됨이 인정 된다면, 최소장애기준 평가로 진행한다.
- 14.7.4.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이 제14.7.3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선수는 '부적격-적격 장애'로 지정되어야 하며, 제 15조의 사항들이 함께 기술 되어야 한다.
15. '부적격-적격 장애'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Eligible Impairment')
- 15.1.¹¹⁾ 제37조(의학(적) 재검) 및 제52.3항(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 또는 '부적격-적격 장애'로 지정된 선수는
- 15.1.1. 해당 종목의 공인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 15.1.2. (해당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추가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해당 지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종목의 다른 국제연맹(협회)이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5.2. 제14.7항에 따라 선수를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 또는 '부적격-적격 장애'로 지정하는 것은 재검 또는 항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장 제3부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15.3.¹²⁾ 국제연맹(협회)은 제36조에 따라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 또는 '부적격-적격 장애'로
-
- 10) 제14.5.2호에 대한 주석: 선수가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 또는 '부적격-적격 장애'로 지정하는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해당 선수가 평가받은 적격 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예: 근력 장애 및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장애의 경우 '부적격 - 적격 장애')]
- 11) 제15.1항에 대한 주석: '부적격-적격 장애(재평가)' 또는 '부적격 - 적격 장애'로 지정된 선수가 이후 (i) 다음 대회에서 출전하거나 출전을 시도하거나, (ii) 추가 등급분류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다른 종목에 대한 등급분류 포함), 각 경우에 해당 지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모든 선수를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B.2 3단계: 최소장애기준 평가 (MIC Assessment)

16. 최소장애기준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MIC Assessment)

16.1. 각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6.1.1. 스포츠가 수용하는 각 적격 장애(및 해당되는 경우 적격 장애의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최소장애기준을 정의하고, 이 기준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6.1.1.1.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16.1.1.2.¹³⁾ 보조 장비의 사용이 선수가 해당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특정 동작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16.1.2. 선수의 적격 장애가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등급분류 패널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6.1.2.1. 최소장애기준 평가는 제5.1항에 명시된 목적, 즉 선수의 적격 장애가 해당 종목 내에서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6.1.2.2. 최소장애기준 평가는 선수의 적격 장애에 대한 평가(즉, 장애 기반 검사 및/또는 기타 임상적으로 인정된 검사)에만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스포츠에서 수행되는 업무나 활동 또는 선수의 스포츠 수행 능력의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16.1.2.3. 장애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는 방법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6.2. 최소장애기준 평가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16.3. 최소장애기준 평가가 완료되면

16.3.1.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해당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한다고 만족하면, 스포츠 등급 평가로 진행된다.

12) 제15.3조항에 대한 주석: 이 요건은 선수가 현재 국제연맹(협회)의 회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3) 제16.1.1.2목에 대한 주석: 최소장애기준을 정의 할 때 보조 장비의 역할은 스포츠 등급 배정의 보조 장비의 역할과 다르다.

- 16.3.2.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해당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재평가)'으로 지정되며, 제 17조의 사항들이 함께 기술 되어야 한다..
- 16.4. 등급분류 패널은 최소장애기준 평가 결과를 국제연맹(협회)에 통보하고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등급분류 패널의 서면 설명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16.5. 선수가 '부적격-최소장애기준(재평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선수는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로부터 두 번째 최소장애기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16.5.1. 첫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위원은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16.5.2.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은 첫 번째 등급분류 패널의 서면 설명을 검토해야 한다.
 - 16.5.3.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해당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한다고 만족하면, 스포츠 등급 평가로 진행된다.
- 16.6.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해당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지정되며 제17조의 결과가 계속 적용된다.
- 17. '부적격-최소장애기준' 지정 (Designation of 'Not Eligible - MIC')
- 17.1.¹⁴⁾ 제37조(의학(적) 재검) 및 제52.3항(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부적격-최소장애기준(재평가)' 또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지정된 선수는
 - 17.1.1. 해당 종목에서 동일한 적격 장애를 이유로 공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17.1.2. 추가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해당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해당 지정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 17.2. 그러나 선수는 공인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17.2.1. 다른 적격 장애를 기준으로 같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 (i) 해당 종목이 해당 적격 장애를 충족하고, (ii) 선수가 해당 적격 장애에 대한 종목의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17.2.2. 동일한 적격 장애를 기준으로 다른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 (i) 다른 종목이 해당 적격 장애를 충족하고, (ii) 선수가 해당 적격 장애에 대한 다른 종목의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4) 제17.1항에 대한 주석: '부적격-최소장애기준(재평가)' 또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 판정을 받은 선수가 이후 (i) 해당 스포츠에서 해당 적격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공인 대회에 출전하거나 출전 시도를 하는 경우 또는 (ii) 추가 등급분류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다른 종목에 대한 등급분류 포함), 각 경우에 해당 판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7.3. 제16.5항에 따라 선수를 '부적격- 최소장애기준(재평가)' 또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 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검 또는 항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장 제3부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17.4.¹⁵⁾ 국제연맹(협회)은 제36조에 따라 '부적격-최소장애기준(재평가)' 또는 '부적격- 최소장애 기준'으로 지정된 모든 선수를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B.3 4단계: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부여 (Sport Class and Sport Class Status allocation)

B.3.1 스포츠 등급 (Sport Class)

18. 스포츠 등급 평가 실시 (Conducting the Sport Class Assessment)

18.1. 제30조(평가 세션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 및 제31조(평가 세션 불참)에 따라, 선수가 해당 종목의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선수는 반드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아야 한다.

18.2. 각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8.2.1. 스포츠 등급 평가가 제5.1항에 명시된 목적, 즉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될 것임을 명시한다.

18.2.2. 스포츠 등급을 정의할 때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여 정의하며, 여기에는 모든 보조 장비의 영향을 포함한다.

18.2.3.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에게 부여할 스포츠 등급을 평가할 때 사용할 평가 방법론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18.2.4. 각 스포츠 등급 내에서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장비(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보조 장비, 그리고 해당 스포츠 등급 내에서 이러한 보조 장비의 사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명시한다.

18.3. 선수에게 어느 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지 평가할 때,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18.3.1.¹⁶⁾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18.3.2. 관찰 평가를 제외한 스포츠 등급 평가의 모든 부분은 통제된 비경쟁 환경, 즉 주요 과제와 활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한다.

15) 제17.4조항에 대한 주석: 이 요건은 선수가 현재 국제연맹(협회)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16) 제18.3.1호에 대한 주석: 따라서 등급분류 패널은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력 수준 및/또는 기술 숙련도와 같은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훈련 이력 및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18.4. 스포츠 등급 평가는 반드시 직접 참여해야 한다.
- 18.5. 보조 장비의 사용:
- 18.5.1.¹⁷⁾ 스포츠 등급 평가를 실시할 때,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선수가 대회에서 사용하려는 보조 장비(있는 경우)를 사용할 때의 선수를 평가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보조 장비의 사용(필수 또는 선택 사항)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스포츠 등급 평가는 선수의 장비 사용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중 해당 장비(예: 스트랩 또는 장갑)의 최적의 사용법을 고려해야 한다.
- 18.5.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패널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수가 대회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 받은 보조 장비가 해당 종목의 등급분류 및/또는 기타 보조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선수의 장비가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해당 장비를 스포츠 등급 평가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을 결정할 때 해당 장비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18.5.3. 보조 장비의 사용(또는 미사용)에 대한 선수의 선택이 배정된 종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8.5.3.1. 이 정보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예: 보조 장비에 대한 특정 지정을 생성하는 등).
- 18.5.3.2.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 선수가 동일한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것(해당 보조 장비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은 경우), (ii) 선수가 특정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해당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은 경우).
- 18.6. 위에 명시된 스포츠 등급 평가의 초기 단계를 완료한 후, 등급분류 패널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 18.6.1. 선수에게 아래 제18.7항에 따라 관찰 평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임시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고, '관찰 평가(Observation Assessment)'를 의미하는 추적 코드 'OA'를 사용한다.
- 18.6.2. 선수에게 최종 스포츠 등급을 부여하며, 이 경우 선수는 스포츠 등급 상태도

17) 제18.5.1호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스포츠 규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복부 스트래핑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선수가 이러한 스트래핑을 사용하지 않아 않는 균형이 좋지 않은 경우, 선수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결정에 따른 결과로,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위한 다른 스포츠 등급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응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배정받아야 한다.

18.7. 관찰 평가

- 18.7.1. 관찰 평가의 목적은 경기 중 관찰된 내용이 이전 단계의 등급분류에서 관찰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 환경에서 선수를 관찰하고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 18.7.2. 각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8.7.2.1.¹⁸⁾ 선수가 최종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배정받기 전에 관찰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를 명시해야 한다.
 - 18.7.2.2. 관찰 평가 동안 등급분류 패널이 관찰할 내용
 - 18.7.2.3. 관찰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내용
- 18.7.3. 관찰 평가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18.7.3.1.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단계의 선수 평가 세션을 수행한 동일한 등급분류 패널이 관찰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 18.7.3.2. 관찰 평가는 선수가 자신의 임시 스포츠 등급에서 처음으로 출전(첫 출전)하는 공인 대회에서 직접 실시해야 한다. 선수는 첫 출전 대회에서 자신의 임시 스포츠 등급으로 출전할 수 있다.
 - 18.7.3.3.¹⁹⁾ 첫 출전은 동일한 임시 스포츠 등급 내의 모든 이벤트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게 첫 출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서 관찰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8.7.3.4. 팀 스포츠의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첫 출전 시 관찰 평가가 언제 실시되는지(가능한 가장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선수가 해당 종목의 모든 관련 포지션에 처음으로 의미 있게 참여하거나 관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수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 등급분류 규정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예선 라운드가 있는 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모든 관찰 평가는 예선 라운드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8) 제18.7.2.1목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관찰 평가는 특정 적격 장애 및/또는 스포츠 등급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장애 및/또는 스포츠 등급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

19) 제18.7.3.3목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장애인 수영에서 접두사 "S"가 붙은 스포츠 등급은 자유형, 접영, 배영의 세 가지 영법 종목을 포함한다. 선수에게 해당 스포츠 등급이 잠정적으로 배정된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가 출전하는 영법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걸쳐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서 해당 선수를 참관할 수 있다.

- 18.7.3.5. 관찰 평가는 가급적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 18.7.4. 관찰 평가 후 등급분류 패널은
 - 18.7.4.1. 선수에게 최종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한다.
 - 18.7.4.2. 선수에게 이전 단계의 평가 세션을 다시 진행하거나 추가 관찰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8.7.5. 등급분류 패널은 관찰 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선수에게 제18.6.1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배정된 스포츠 등급과 다른 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수 없다.
- 18.8. 임시 스포츠 등급을 받은 선수가 최종적으로 다른 최종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
 - 18.8.1. 개인 스포츠의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된다.
 - 18.8.2. 팀 스포츠일 경우
 - 18.8.2.1. 예선전이 있는 팀 스포츠 대회인 경우, 그러한 변경은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선수는 변경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대회 또는 기타 공인 대회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다.
 - 18.8.2.2. 예선전이 없는 팀 스포츠 대회인 경우, 그러한 변경은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즉시(이 경우 선수는 변경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대회 또는 기타 공인 대회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음) 또는 해당 대회 종료 직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 18.8.3. 국제연맹(협회)은 스포츠 등급의 변경이 해당 대회의 결과와 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18.9. 선수는 자신에게 부여된 스포츠 등급에서만 출전할 수 있다.
- 19. 다수의 스포츠 등급 자격 (Eligibility for multiple Sport Classes)
 - 19.1.²⁰⁾ 각 국제연맹(협회)은 자체적으로 스포츠 등급을 정의하고, 선수에게 다수의 스포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 19.2. 국제연맹(협회)은 한 선수가 다수의 스포츠 등급에 배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에서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9.2.1.²¹⁾ 선수가 두 개 이상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 제19.1항에 대한 주석: 일부 선수는 한 종목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스포츠 등급에 배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가 신체, 시각 및/또는 지적 장애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1) 제19.2.1호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장애인 수영에서 선수는 다양한 영법을 포함하기 위해 다수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접두사 "S"가 붙은 스포츠 등급은 자유형, 접영, 배영에 해당하고, 접두사 "SB"가 붙은 스포츠 등급은 평영 종목에 해당) 마찬가지로 장애인 육상에서도 선수는 "T" 스포츠 등급(트랙 종목)과 "F" 스포츠 등급(필드 종목)을 배정받을 수 있다.

선수는 다수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전하고자 하는 스포츠 등급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 19.2.2.22) 선수가 두 개 이상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출전하고자 하는 스포츠 등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선수가 그 선택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 19.2.3.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는 모든 적격 장애와 관련하여 평가 세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B.3.2 스포츠 등급 상태 (Sport Class Status)

20. 스포츠 등급 상태 (Sport Class Statuses)

20.1. 스포츠 등급 상태는 선수가 향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를 나타낸다.

20.2. 사용 가능한 스포츠 등급 상태는 다음과 같다:

- 20.2.1. 확정(C)
- 20.2.2.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 20.2.3. 재검일 지정 재검(R-FRD) 또는
- 20.2.4. 만료(E)

21. 스포츠 등급 상태 배정 (Allocation of Sport Class Statuses)

21.1. 스포츠 등급 상태는 아래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21.1.1. '확정(C)':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의 적격 장애의 특성과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특정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선수의 스포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에게 '확정(C)'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1.1.2.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21.1.2.1. 다음의 경우 선수에게는 자동으로 스포츠 등급 상태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이 부여된다.

21.1.2.1.1. (i) 단독 등급분류사 및/또는 (ii)

파라카누에서는 선수에게 "KL" 및 "VL"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여 두 가지 유형의 보트를 모두 다룰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선수가 출전하고자 하는 스포츠 등급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육상에서 선수는 필드 종목에서 좌식 또는 입식 종목에 출전할 수 있지만,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두 종목 모두에 출전할 수 없음). 파라트라이애슬론의 경우, 신체 장애와 시각 장애를 모두 가진 선수는 해당 적격 장애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출전하고자 하는 스포츠 등급을 선택해야만 한다.

22) 제19.2.2호에 대한 주석: 이러한 변경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 국제연맹(협회)은 무엇보다 해당 종목의 대회 주기와 패럴림픽을 위한 예선전을 고려해야 한다.

선수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등급 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패널 (제7.3.1호 참조)

21.1.2.1.2. 국제연맹(협회)이 의학적 재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제37.10항 참조)

21.1.2.1.3. 국가연맹(협회) 항의가 접수되었거나 국제연맹(협회) 항의가 제기된 경우 (제45.1.1호참조).

21.1.2.2.²³⁾ 또한 등급분류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에게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등급 상태를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1.2.2.1. 선수가 '경계선'에 있는 경우(즉, 최소 장애기준을 근소하게 충족하거나 두 개의 스포츠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21.1.2.2.2. 등급분류 패널은 현재 연도 및/또는 시즌 내 추후 가능 일자에 추가 평가 세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1.1.2.2.3. 국제연맹(협회)은 또한 등급분류 규정의 변경이 선수의 적격성 여부,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경우,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2.3.2호 참조).

21.1.3. '재검일 지정 재검(R-FRD)':

21.1.3.1. 등급분류 패널은 추가로 평가 세션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도 및/또는 시즌 내에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에게 '재검일 지정 재검(R-FRD)'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 등급분류 패널은 해당 선수가 다음 가능한 기회에 새로운 평가 세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날짜(현재 연도 또는 시즌 종료일 이전은 불가)를 지정해야 한다.

21.1.3.2. 국제연맹(협회)은 또한 등급분류 규정의 변경이 선수의

23) 제21.1.2.2목에 대한 주석: 선수가 최근 공인 대회에 다시 참가를 시작한 경우, 한 가지 이상의 변동성 및/또는 진행성 또는 퇴행성 장애가 있거나 완전한 근골격 또는 스포츠 성숙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평가 세션이 필요할 수 있다.

(부)적격 장애,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재검일 지정 재검(R-FRD)'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52.3.2호 참조). 이러한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적절한 재검일을 지정해야 한다.

21.1.3.3. 지정 재검일은 일반적으로 선수의 이전 평가 세션이 열린 날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21.1.4. '만료(E)'

21.1.4.1. 선수는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따라 은퇴 시 자동으로 스포츠 등급 상태가 '만료(E)'로 부여된다. 각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의 은퇴 요건을 해당 연맹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21.1.4.2. 국제연맹(협회)은 또한 선수가 지정된 기간 내에 평가 세션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등급을 '만료(E)' 상태로 결정할 수 있다. 국제연맹(협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i)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등급 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최대 기간, (ii) '재검일 지정 재검(R-FRD)' 등급 상태가 지정된 재검일이 지난 후 유효하게 유지되는 최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22. 스포츠 등급 상태가 공인 대회에 참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port Class Status on participation in Covered Competitions)

22.1. '확정' 등급을 부여 받은 선수는 다음의 결과로 인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i) 국제연맹(협회) 항의, 수락된 국가연맹(협회) 항의, 또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ii) 의학(적) 재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iii) 제52.3항에 따른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22.2. 국제연맹(협회)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선수에게 부여된 스포츠 등급 상태에 따라

22.2.1.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의 경우 선수는 공인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 세션을 완료해야 한다.

22.2.2. '재검일 지정 재검(R-FRD)'의 경우, 선수는 지정 재검일 전까지 공인 대회에 출전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음 공인 대회에서 경기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 세션을 완료해야 한다.

22.3.²⁴⁾ 선수가 '만료(E)'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은 경우, 해당 선수는 새로운 평가 세션에서 스포츠 등급

24) 제22.3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은 스포츠 등급 상태가 '만료(E)'인 선수가 이전에 '확정(C)' 스포츠 등급 상태를 가졌던 경우라면 추가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래 스포츠 등급 상태인 '확정(C)' 스포츠 등급 상태로

및 스포츠 등급 상태를 배정받는 등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요건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공인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 B.4 모든 평가 세션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s applicable to all Evaluation Sessions)
- 23. 국제연맹(협회)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 23.1.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대면 또는 비대면)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 연맹의 등급분류 규정과 적용 가능한 행동 규약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23.2.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에 장소, 날짜, 종목 및 장애 유형 등을 포함한 등급분류 행사 일정에 대한 적절한 공지를 해야 한다.
 - 23.3.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을 진행하는 등급분류 패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등급분류 패널에 제공해야 한다.
 - 23.4. 국제연맹(협회)은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와 등급분류 패널이 작성한 양식, 보고서 또는 기타 서면 기록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향후에 해당 선수를 평가할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나 등급분류 패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보존은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의 적용을 받는다.
- 24. 평가 세션 참석 (Attendance at Evaluation Sessions)
 - 24.1. 선수와 등급분류 패널 이외의 다음 해당자들도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다.
 - 24.1.1. 제25.2항의 요건에 따라 선수와 동행하는 국가의 대표와 (필요한 경우) 통역사
 - 24.1.2.²⁵⁾ 국제연맹(협회)(또는 국제연맹(협회)을 대리하는 수석 등급분류사)이 결정한 견습 등급분류사 및 해당 견습 등급분류사의 교육에 관여하는 기타 모든 승인된 해당자
 - 24.1.3.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 준수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지정한 관찰자
 - 24.1.4. 등급분류 패널이 제28조에 따라 의료, 임상, 기술 및/또는 과학적 자문을 구하는 모든 해당자
 - 24.2. 본 등급분류 규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와 등급분류 패널 위원은 평가 세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 24.3.²⁶⁾ 제 24.1항에 따라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당자는 직접 참석할 수 있다. 또는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등급분류 규정에 제공할 수 있다.

25) 제24.1.2호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에 참가하는 견습 등급분류사/트레이너의 수를 결정할 때 선수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26) 제24.3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평가 세션에 원격으로 참석하는 해당자가 인터넷 연결이 너무 약하거나 간헐적이어서

평가 세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 참석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전화나 화상(또는 기타 가상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다.

25. 평가 세션과 관련한 국가연맹(협회) 및 선수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Federations and Athletes in relation to Evaluation Sessions)

25.1.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평가 세션과 관련하여 해당 선수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선수의 국가연맹(협회)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25.2.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25.2.1. 선수는 평가 세션 동안 최대 2명까지 동반할 수 있다.

25.2.1.1. 선수를 지원하고 선수의 등급분류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소속 국가의 대표자 1명(미성년자이거나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능력이 부족한 선수는 그러한 해당 국가의 대표자와 동행해야 한다)

25.2.1.2. 필요한 경우 통역사 1명(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주선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국가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통역사)

25.2.2. 선수는 평가 세션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며, 등급분류 패널이 제공하는 모든 적절한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25.2.3. 국제연맹(협회) 규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선수는 (i) 국제연맹(협회)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스포츠 복장 및 해당 대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 장비를 착용하고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하며, (ii) 해당 복장 및 보조 장비의 사용 목적을 등급분류 패널에게 공개해야 한다.

25.2.4. 의약품, 의료기기/임플란트 및 시술:

25.2.4.1.²⁷⁾ 선수는 등급분류 패널에게 평가 세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약물 및/또는 의료기기/임플란트(청각 보조기기 및/또는 안경이나 교정 렌즈와 같은 굴절 또는 광학 교정 장치 포함)와 관련된 사용 여부 및 모든 의료 시술을 공개해야 한다.

25.2.4.2. 선수는 (i) 모든 공개된 의료기기/임플란트를 소지하고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하며, (ii) 국제연맹(협회) 규정에서 요구하거나 기타 등급분류 패널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된

평가 세션이 지속적으로 방해 받는다면, 이러한 것을 부정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27) 제25.2.4.1목에 대한 주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선수에게 요구되는 모든 약물, 의료기기/임플란트, 의료 시술의 사용에 대한 공개 의무는 적용 가능한 모든 도핑방지 규정에 따른 의무(치료목적사용면책 및 도핑검사서의 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는 전적으로 별개이다.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에게 공개하는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도핑방지 규정을 위한 공개 또는 신청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물 및/또는 관련 의료 처방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지하고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 26. 평가 세션과 관련한 등급분류 패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the Classification Panel in relation to Evaluation Sessions)
 - 26.1.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분류 패널의 책임을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26.1.1. 등급분류 패널은 평가 세션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 26.1.2.²⁸⁾ 제14.4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동일한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와 관련된 평가 세션의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 26.1.3. 등급분류 패널은 국제연맹(협회)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평가 세션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 26.1.4. 등급분류 패널은 국제연맹(협회)을 대표하여 평가 세션에 참석하는 모든 관계자의 이름과 역할을 선수에게 공지해야 한다(이들이 대면 참석하든 비대면 참석하든 관계없이).
 - 26.1.5. 평가 세션을 진행할 때, 등급분류 패널은 해당 선수, 국가연맹(협회)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제공한 정보 및 아래 제28조에 따라 획득한 추가 정보만을 고려할 수 있다.
 - 26.1.6. 등급분류 패널은 등급분류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를 국제연맹(협회)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하고 해당 기록의 사본을 국제연맹(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27. 이전 등급분류 평가 세션에 대한 고려 사항 (Consideration of prior Evaluation Sessions)
 - 27.1. 등급분류 패널이 이전에 한 번 이상의 평가 세션을 거친 선수를 평가하는 경우,
 - 27.1.1.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등급분류 패널은 이전 등급분류 패널의 해당 양식, 보고서 또는 기타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 27.1.2.²⁹⁾ 평가세션과 관련하여,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 대한 이전 평가와 관련 있는 이전 등급분류 패널의 어떠한 등급분류사와도 상의해서는 안된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급분류 패널은 이전의 등급분류 패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했던 관계자를 포함하여 제28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28. 추가 정보 또는 전문 지식에 대한 등급분류 패널 요청 (Classification Panel requests for

28) 제26.1.2호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예외적 상황'은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예: 등급분류사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등급분류 패널이 평가 세션의 모든 측면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29) 제27.1.2조항에 대한 주석: 명확히 하기 위해, 항의 패널 구성에 관한 제45.2항에 따라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의 이전 평가 세션을 수행한 등급분류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등급분류사는 새로운 등급분류 패널과 선수에 대한 이전 평가를 논의해서는 안된다. (제27.1.1호에 언급된 서류 검토 과정 이외에).

additional information or expertise)

- 28.1. 등급분류 패널은 어느 단계에서든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평가세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진단 정보 포함)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등급분류 패널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평가 세션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급분류 패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제30조에 따라 평가 세션을 중단할 수 있다.
- 28.2. 등급분류 패널은 어느 단계에서든 국제연맹(협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세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의료, 임상, 기술 및/또는 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9. 평가 세션의 이전 단계 재실행 요구 사항 (Requirement to redo prior stages of the Evaluation Session)
 - 29.1. 등급분류 패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선수에게 평가 세션의 이전 단계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0. 평가 세션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an Evaluation Session)
 - 30.1. 등급분류 패널은 국제연맹(협회)(또는 국제연맹(협회)을 대리하는 수석 등급분류사)과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평가 세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평가 세션을 중단할 수 있다.
 - 30.1.1. 선수가 해당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1.2.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이 등급분류 패널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0.1.3.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가 공개한 약물 또는 의료기기/임플란트 또는 의료 시술의 사용(또는 미사용)이 선수의 등급분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30.1.4. 선수가 평가 세션 중 등급분류 패널의 요청을 준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건강 상태 또는 장애가 있으며, 이것이 등급분류 패널이 해당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평가 세션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30.1.5. 선수가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패널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없는 경우
 - 30.1.6. 등급분류 패널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선수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등급분류 패널의 지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0.1.7.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의 적절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30.1.8. 선수 또는 동행한 국가의 대표자 또는 통역사(또는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연맹(협회)과 관련된 기타 모든 관계자)가 평가 세션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 30.1.9. 해당 등급분류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관계자가 평가 세션에 참석하거나 참석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30.1.10.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가 일관되지 않아(즉,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 세션을 완료하고 선수에게 적절한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30.1.11. 선수의 능력에 대한 진술이 등급분류 패널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30.2.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세션이 중단된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해당 선수를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해야 한다. 제14.3항에 따라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 30.2.1. 등급분류 패널은 서면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 (i) '등급분류 미완료(CNC)' 지정이 적용된 이유를 설명하고(해당되는 경우, 선수의 능력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관찰되었다는 내용을 명시), (ii) 해당되는 경우, 평가 세션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맹(협회)과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 30.2.2. 등급분류 패널은 해당되는 경우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항을 (국제연맹(협회)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 30.2.3. 선수가 국제연맹(협회)(또는 국제연맹(협회)을 대리하는 수석 등급분류사)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된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평가 세션 일정이 다시 잡혀야 한다.
- 30.3. 평가 세션이 (어떤 이유로든)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중단되고, 동일한 등급분류 기회에서 같은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재개 및 완료될 수 없는 경우, 평가 세션은 종료되어야 하며, 해당 선수는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 30.4. 등급분류 규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연맹(협회)이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행위로 인해 평가 세션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그 자체로는 의도적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 자체 징계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31. 평가 세션 불참 (Failure to attend an Evaluation Session)
- 31.1. 선수는 평가 세션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 선수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제한 없이,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은 선수가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2.³⁰⁾ 선수가 요청 받은 평가 세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국제연맹(협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31.2.1. 선수가 평가 세션에 불참한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국제연맹(협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동일한 등급분류 가능일에 평가 세션의 일정을 변경하여 다시 잡을 수 있다.

31.2.2. 선수가 평가 세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에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수는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된다.

32. '등급분류 미완료(CNC)' 지정 (Designation of '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

32.1.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된 선수는 평가 세션을 완료할 때까지 공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평가 세션의 일부인 관찰 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32.2. '등급분류 미완료(CNC)' 지정은 재검 또는 항의 또는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32.3. 선수가 3회 이상 연속으로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된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해당 선수가 특정한(고정된) 기간 동안 더 이상 평가 세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할 수 있다.

33. 평가 세션 장소 (Location of Evaluation Sessions)

33.1.³¹⁾ 평가 세션은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 규정에서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인 대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관찰 평가는 예외로 한다.

33.2. 제33.1항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33.2.1. 평가 세션의 어떤 부분이 대회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부분이 대회 외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3.2.2. 어떤 장애 유형이 경기 중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어떤 장애 유형이 경기 외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3.3. 모든 평가 세션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 세션이 개최되는 장소는 평가 세션에 필요한 모든 측면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개최를 위한 요건과 등급분류 개최지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33.4. 스포츠 등급 배정에 관찰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의 일부를 경기 외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는 있지만, 국제연맹(협회)은 (평가 세션에 앞서) 관련 국가연맹(협회)에 등급분류 패널이 관찰 평가 없이 최종 스포츠 등급을 배정할 수 없다는

30) 제31.2항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에게 평가 세션에 참석할 기회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31) 제33.1항에 대한 주석: 평가 세션은 선수에게 등급분류 패널의 평가를 받고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중 또는 경기 외에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의 경기장을 사용하는 국제연맹(협회), 해당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대회, 저시력 전문 센터나 스포츠 과학 연구소 등 경기와 떨어진 장소에서 경기 외 등급분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이 경우 선수는 '등급분류 미완료(CNC)'로 지정되어 추후 다른 날짜에 받아야 한다).

- 34. 사진 및 시청각 기술 (Photographs and audio-visual technology)
 - 34.1. 등급분류 패널은 관찰 평가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사진 및/또는 시청각 기술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자료들을 제작, 생성 및/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사본은 요청 시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34.2. 제34.1항에 따라 평가 세션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금지 조항은 평가 세션에 대면 참석하든 비대면으로 참석하든 관계없이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제5부: 알림 및 공지 (Notification and publication)

- 35. 등급분류 결과 알림 (No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utcome)
 - 35.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완료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선수 및/또는 해당 국가연맹(협회)에 등급분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35.2. 경기 중, 수석 등급분류사는 모든 관련 국제연맹(협회) 기술대표 및 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에게 각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임시 스포츠 등급 포함)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통지해야 한다. 관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찰 평가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추가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35.3. 국제연맹(협회)은 공인 대회를 위해 경기장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5.3.1.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임시 스포츠 등급(관찰 평가를 거쳐 확정이 되어야 하는)을 받아 참가 중인지에 대한 사항
 - 35.3.2. 해당 대회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선수의 최종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사항
- 36.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Classification Master List)
 - 36.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를 관리,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각 선수, (ii) 의도적 허위진술로 현재 국제연맹(협회)으로부터 출전 정지를 받은 모든 참가자에 관한 정보들
 - 36.1.1. 이름
 - 36.1.2. 성별
 - 36.1.3. 생년월일

- 36.1.4. 국적
- 36.1.5.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 36.1.6. 모든 지정('신규(N)',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부적격-적격 장애', '부적격-최소장애기준' 및 '등급분류 미완료(CNC)' 포함), 지정 상태에 첨부된 모든 '재평가' 상태 및 추적 코드(예: 관찰 평가의 경우 'OA')
- 36.1.7. 현재 의도적 허위진술('IM')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기간 및 시작일과 함께 해당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6.2. 공개는 최소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6.3. 국제연맹(협회)은 정보가 변경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36.4.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는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부: 상황의 변화 (Change in circumstances)

- 37. 의학(적) 재검 (Medical Review)
 - 37.1.³²⁾ 선수의 적격 장애의 성격 또는 정도가 변경되면 선수의 이전 등급분류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예: 선수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또는 이전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선수를 재평가하기 위해). 이를 '의학(적) 재검'이라고 한다.
 - 37.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칙에 의학(적) 재검 요청 및 수행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 37.3. 의학(적) 재검은 선수를 대표하여 국가연맹(협회)이 요청해야 한다.
 - 37.4. 선수의 적격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은 의학(적) 재검을 요청해야 한다.
 - 37.5.³³⁾ 의학(적) 재검 요청은 반드시
 - 37.5.1. 요청을 하는 이유(선수의 적격 장애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지, 선수의 이전 등급분류 결과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포함)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37.5.2. 제11조에 따라 업데이트된 진단 정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32) 제37.1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의학(적) 재검 요청은 수술, 새로운 약물 또는 기기 또는 기타 의료 시술 등이 스포츠와 관련된 특정 동작 및 활동 능력에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 적절할 수 있다. 선수에게 새로운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청이 적절할 수 있다.

33) 제37.5항에 대한 주석: 일반적으로 모든 의학(적) 재검 요청에는 상세한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해야 한다.

- 37.6.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연맹(협회)은 진단 정보를 포함하여 의학(적) 재검 요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37.7.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이 의학(적) 재검 요청을 제출할 때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7.8. 의학(적) 재검 요청은 국가연맹(협회)이 제37.5항부터 제37.7항까지를 준수했다고 국제연맹(협회)이 판단하고, 나이, 훈련 수준, 체력 및 기술 숙련도에 기인한 변화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스포츠에서 근간이 되는 특정 동작 및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의 적격 장애의 성격 또는 정도에 변화가 있다고 국제연맹(협회)이 인정하는 경우 받아들여진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학(적) 재검 요청은 기각된다.
- 37.9. 국제연맹(협회)은 완전한 요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의학(적) 재검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7.10. 국제연맹(협회)이 의학(적) 재검 요청을 수락하면, 해당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즉시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로 변경되어야 한다.
- 37.11. 국제연맹(협회)이 의학(적) 재검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선수의 국가연맹(협회)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의학(적) 재검 요청을 기각한 근거를 명시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의 결정은 검토, 항의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7.12.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가 의학(적) 재검이 필요한 선수의 상황 변화를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연맹(협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는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제7부: 경기 구성 방식 (Competition formats)

- 38. 복합 등급 경기 (Combined Class Events)
 - 38.1.³⁴⁾ 패럴림픽 무브먼트에서 등급분류의 목적, 원칙, 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선수의 장애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기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 종목에서 선수들은 같은 스포츠 등급 선수들과 경쟁을 위해 그룹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예를 들어, 단일 종목 스포츠 등급 내 선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하위 레벨 대회의 경우).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국제연맹(협회)은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복합 등급 경기), 이럴 경우 규정에 다음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38.1.1. 어떤 스포츠 등급을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떤 공인 대회에 대해 적용할 수

34) 제38.1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통합 등급 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다

있는지에 대한 사항

38.1.2. 해당 복합 등급 경기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 또는 기준(예를 들어 오직 어떤 특정 스포츠 등급들 간의 조합만이 허용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사항

38.1.3. 국제연맹(협회)이 그러한 통합 등급 경기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관련 스포츠 등급이 해당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결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1. '상위 등급과의 경기'('Competing up'): 선수의 장애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당 스포츠 등급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고 위계적이며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선수가 다른 등급의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선수의 장애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등급의 선수와 경기 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등급은 대회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스포츠 등급 간의 관계가 선형적, 위계적 또는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각 스포츠 등급은 근본적으로 다른 스포츠 활동 제한을 반영하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국제연맹(협회)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등급 번호가 반드시 스포츠 등급 사이에 선형적, 위계적 또는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등급을 구분하도록 연속적으로 붙이는 번호들은 단지 국제연맹(협회)이 다양한 스포츠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일 뿐이며, 이러한 번호들이 스포츠 등급 사이에 선형적, 위계적 또는 유사한 관계를 반영하는 거라고 가정할 수 없다.

2. 멀티 등급 경기: 특정 상황에서 국제연맹(협회)이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3. 멀티 등급 팀 스포츠 및 팀 경기: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이 한 팀의 일원으로 경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각 스포츠 등급에는 정해진 수의 '포인트'가 부여되고 총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치 미만인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 경우이다.]

39. 경기력 보상 체계 (Performance compensation mechanisms)

39.1. 현재 소수의 국제 경기연맹이 복합 등급 경기에 경기력 보상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력 보상 체계는 개별 스포츠 등급과 관련된 경기력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의 기본이 되는 특정 동작과 활동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서로 다른 능력을 고려하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경기력 보상 체계의 예들로는 스코어 점수를 보정해주는 방식(factor systems)이나 시간차를 두고 먼저 출발하게 함으로써 이점을 주는 방식(staggered starts) 등이 있다.

39.2.³⁵⁾ 2024년 5월 17일 현재 적용 대상 대회 내에서 경기력 보상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제연맹(협회)은 적용 대상 대회에서 복합 등급 경기 내에서 경기력 보상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

35) 제39.2항에 대한 주석: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경기력 보상 체계가 등급분류의 목적, 원칙, 과학적 근거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경기력 보상 체계가 선수들 간의 예상되는 경기력 차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i) 대회를 위해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을 함께 출전시키기 위해 선수들을 그룹화한다. 그리고 (ii)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 간의 경기력 차이를 중화하기 위해 해당 대회 규칙을 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체계는 선수의 장애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경기력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복잡성을 더하고, 선수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기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위협에 빠뜨린다. 따라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현재 의도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고 적절한 전환 조항이 마련되는 대로 적용 대상 대회에서 복합 등급 경기 내 경기력 보상 체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기력 보상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스포츠에 적합한 다른 대안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 3 장

항의 및 항소

PROTESTS AND APPEALS

제1부: 개요 (Overview)

- 40. 개요 (Overview)
- 40.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약에 항의 및 항소를 통해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40.1.1. '항의'는 선수에게 부여된 스포츠 등급에 대해 제기하는 이의 제기이다.
 - 40.1.2. '항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 절차의 모든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40.1.2.1. 등급분류 과정에서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0.1.2.2. 해당 위반으로 인해 선수가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부적격-적격 장애',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잘못 지정되거나 잘못된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부: 항의 (Protests)

- 41. 항의의 범위 (Scope of Protests)
- 41.1. 항의는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 41.2. 명확히 하기 위해, (i)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 (ii) '부적격-기저 건강 상태', '부적격-적격 장애' 또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 지정(해당 선수가 이미 자동 2차 평가를 받은 경우), (iii) '등급분류 미완료(CNC)' 지정 또는 (iv) 기타 등급분류 규약에 따라 항의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항의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한다.
- 42. 항의 권한이 있는 당사자 (Parties permitted to make a Protest)
- 42.1. 항의는 다음 기관 중 한 곳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 42.1.1. 국가연맹(협회), 또는
 - 42.1.2. 국제연맹(협회)
- 42.2.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는 직접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항의는 제42.1항에 열거된 기관 중 한 곳에서만 선수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다.
- 43. 국가연맹(협회) 항의 (National Federation Protest)
- 43.1.³⁶⁾ 국가연맹(협회)은 해당 연맹이 관할하는 선수에 대해서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다른

36) 제43.1조항에 대한 주석: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국제연맹(협회), 국가연맹(협회), 선수 등)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등급분류 규약과 선수에게 올바른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기준인

국가연맹(협회)의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대해서는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국가연맹(협회)은 해당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에 대한 우려를 국제연맹(협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 항의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43.2. 국가연맹(협회) 항의는 선수가 잘못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았다고 믿을 만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 43.3. 국가연맹(협회) 항의는 국제연맹(협회)이 국가연맹(협회)이 제43.6항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연맹(협회)이 선수에게 잘못된 스포츠 등급이 배정되었다고 믿을 만한 적절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연맹(협회)의 항의는 기각된다.
- 43.4. 국가연맹(협회) 항의는 평가 세션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 항의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43.5. 선수가 관찰 평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임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은 경우, 국가연맹(협회)은 다음과 같이 항의할 수 있다.
 - 43.5.1. 관찰 평가 이전과 이후에 모두 항의하는 경우, 이 경우 관찰 평가 이후에 이루어진 항의는 관찰 평가 이전의 평가 세션의 어떤 측면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 43.5.2. 관찰 평가 이전에만 항의하거나 관찰 평가 이후에만 항의할 수 있다(이 경우 항의는 관찰 평가 이전 평가 세션의 측면과 관찰 평가 자체에 모두 관련될 수 있다).
- 43.6. 항의서를 제출하려면 국가연맹(협회)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43.6.1. 국제연맹(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항의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6.1.1. 항의한 선수의 이름과 종목
 - 43.6.1.2. 항의 결정의 세부 사항 및/또는 사본
 - 43.6.1.3. (해당되는 경우) (i) 위반 또는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되는 특정 규정에 대한 언급과 (ii)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여 선수가 잘못된 스포츠 등급을 배정받았다고 국가연맹(협회)이 믿는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 43.6.2. 국제연맹(협회)이 정한 기한까지 작성된 항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43.6.3.³⁷⁾ 해당 항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국제표준에서 신중하게 균형 잡힌 여러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37) 제43.6.3호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규정에서 항의 종료 시 항의 수수료를 환불할지 여부(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 43.7. 항의 양식을 접수한 국제연맹(협회)은 제43.3항에 따라 항의에 대한 재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석 등급분류사가 항의 대상 결정의 등급분류 패널 위원인 경우, 해당 수석 등급분류사는 국제연맹(협회)의 항의 검토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 43.8. 국제연맹(협회)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항의 결과를 국가연맹(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항의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도 제공해야 한다.
44. 국제연맹(협회) 항의 (International Federation Protest)
- 44.1.³⁸⁾ 국제연맹(협회)이 선수에게 잘못된 스포츠등급이 배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에 항의할 수 있다.
- 44.2. 국제연맹(협회)은 언제든지 항의할 수 있다.
- 44.3. 국제연맹(협회)이 항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44.3.1.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국가연맹(협회)에 항의 사실을 통지한다.
- 44.3.2. 항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45. 항의 패널 절차 (Protest Panel procedures)
- 45.1. 국가연맹(협회) 항의 또는 국제연맹(협회) 항의가 접수된 경우 다음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 45.1.1. 항의한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즉시 '추후 가능일자 재검 (R-NAO)'로 변경되어야 한다(이미 해당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가 원래 '추후 가능일자 재검(R-NAO)' 였던 경우는 그대로 함).
- 45.1.2. 선수가 관찰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선수의 첫 출전 전에 국가연맹(협회) 항의가 접수된 경우, 선수는 국가연맹(협회) 항의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45.1.3. 국제연맹(협회)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평가 세션을 진행하기 위해 제45.2항에 따라 항의 패널을 임명하고, 새로운 평가 세션이 진행될 시간과 날짜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45.1.4. 항의가 대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새로운 평가 세션은 해당 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45.2. 국제연맹(협회)은 제7조의 등급분류 패널 임명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항의 패널을 임명해야 한다. 항의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분류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환불할지)를 명시할 수 있다.

38) 제44.1항에 대한 주석: 위의 제43.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연맹(협회)(또는 기타 제3자)이 다른 국가연맹(협회) 소속 선수가 잘못된 스포츠등급을 배정받았다고 우려하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여 국제연맹(협회)이 국제연맹(협회) 항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45.2.1. 항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관여했던 등급분류 패널인 경우
 - 45.2.2. 국가연맹(협회) 항의일 경우, 해당 항의에 대한 국제연맹(협회)의 검토에 참여한 경우
 - 45.2.3. 국제연맹(협회) 항의의 경우, 해당 항의에 대한 국제연맹(협회)의 결정에 관여한 경우
 - 45.2.4. 국가연맹(협회)과 국제연맹(협회)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의 결정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항의 대상 선수의 등급분류 목적(국가 또는 국제 수준)의 평가 또는 평가에 관여한 경우
- 45.3. 항의 패널은 제4부 B.평가 세션에 따라 새로운 평가 세션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4부 B.평가 세션의 등급분류 패널에 대한 언급은 항의 패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항의 패널은 항의 결정과 항의의 일부로 제출된 모든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 45.4.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항의 패널의 최종 결정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통보되어야 한다.
- 45.5. 제45.6항 및 제45.7항에 따라 항의 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국가연맹(협회) 또는 국제연맹(협회)의 추가 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의 패널의 결정은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이 항소할 수 있다.
- 45.6. 국제연맹(협회)이 국제연맹(협회) 규정에 따른 국가연맹(협회) 항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항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항의에 대한 항의 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으며, 국가연맹(협회) 또는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추가적인 항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항의 패널의 결정은 1차 등급분류 패널의 결정인 것처럼 간주한다. 또한 항의 패널의 결정은 제47조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에 의해 항소될 수 있다.
- 45.7. 항의 패널이 선수를 '부적격-적격 장애' 또는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선수는 제14.7항에 따라 새로운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추가적 적격 장애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는 제16.5항에 따라 추가적인 최소장애기준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의 패널의 결정이 마치 1심 등급분류 패널의 결정인 것처럼 취급되며, 선수의 지정에 '재평가'가 추가된다.
- 45.8. 국제연맹(협회)은 항의에 따라 선수의 스포츠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결과 및 상금에 대한 결과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46. 항의 패널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Circumstances where a Protest Panel is not available)
- 46.1.³⁹⁾ 대회 내에서 항의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대회에서 항의가 해결될 기회가 없는 경우,

39) 제46.1항에 대한 주석: 이 조항은 같은 대회에서 대회 내 항의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능한 등급분류사의 인원 또는 평가 세션 슬롯이 제한되어 있거나, 가능한 등급분류사 중 이해상충으로 인해

- 46.1.1. 항의가 제기된 선수는 항의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해당 대회에 대한 기타 자격 기준에 따라)으로 해당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야 한다.
- 46.1.2. 해당 대회가 끝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항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부: 항소 (Appeals)

47.40) 항소 범위 (Scope of Appeals)

47.1. 국가연맹(협회)이 다음의 사항들을 입증한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 47.1.1. 등급분류 과정에서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7.1.2. 해당 위반으로 인해 선수가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부적격-적격 장애',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잘못 지정되거나 잘못된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8. 항소 제출 (Making an Appeal)

48.1.41) 항의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항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를 제출하기 위해 국가연맹(협회)이 먼저 항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48.2. 항소는 국가연맹(협회)이 관할권 하에 있는 선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는 직접 항소를 제출할 수 없으며, 국가연맹(협회)이 선수를 대신하여 항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48.3. 국제연맹(협회)은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49. 항소 기구 (Appeal Body)

49.1. 각 국제연맹(협회)은 항소를 청문하고 결정할 항소 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49.2. 최소한 제49.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항소 기구에서 항소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공정한 청문회(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 여부)를 제공해야 한다.

49.3. 각 국제연맹(협회)은 항소 기구를 설립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항의 패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0) 제47조항에 대한 주석: 항소 기구의 검토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항소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배정 또는 부적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스포츠 결정이며 국제연맹(협회)으로부터 권한과 인증을 받은 관계자가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유사한 권한과 인증을 받은 다른 관계자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항소 주체는 결정이 내려진 절차를 검토하여 해당 절차가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41) 제48.1항에 대한 주석: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연맹(협회)이 항소를 제출하기 위해 먼저 항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항의와 항소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 49.3.1. 항소 기구는 국제연맹(협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49.3.2.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해당 항소를 청문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9.4. 항소는 1인 또는 3인의 항소 기구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한다(3인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한 위원이 청문회 패널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 기구의 위원은 특정 청문회 패널을 맡을 수 없다. (i) 현재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사이며, (ii) 이전에 해당 사안 또는 절차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여한 적이 있으며, (iii) 기타 공정성 또는 독립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 49.5.⁴²⁾ 국제연맹(협회)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항소를 청문하고 결정하는 전문 분쟁 해결 기구로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BAC)를 설립했다. 국제연맹(협회)은 국제패럴림픽 위원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를 항소 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49.6.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가 항소 기구인 경우, 해당 기관은 절차 규정에 따라 항소를 청문하고 결정한다. 그 외의 모든 경우, 항소는 국제연맹(협회)의 관련 규정(절차 규정 포함)에 따라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 49.7.⁴³⁾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에 항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0. 항소 결정 (Appeal decision)
- 50.1. 항소 기구는 항소 결정을 확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항소 기구는 선수 등급분류,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 결정을 수정, 변경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예: 선수에게 새로운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하는 등)
- 50.2. 항소 기구는 청문회 후 국제연맹(협회)이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적정한 이유를 담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면 결정에는 항소기구의 결정 이유와 그 결과로 요구되는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항소 기구의 결정이 기존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취소일 경우, 서면 결정서에는 구체적인 잘못된 절차와 해당 위반 절차가 어떻게 선수를 '부적격-기저 건강상태', '부적격-적격 장애', '부적격-최소장애기준'으로 지정하거나 잘못된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가 부여되었는지 명시해야 한다.
 - 50.2.1. 항소 기구의 결정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50.2.2. 항소 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의 항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2) 제49.5항에 대한 주석: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해당 국제연맹(협회)과 합의에 따라 항소심 의결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국제연맹(협회)이 BA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국제연맹(협회)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협의한다.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제49.7항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은 규정에서 항소 종료 시 항소 수수료의 환불 여부(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환불되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제 4 장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 51.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 51.1. 다음은 의도적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 51.1.1. 피의자가 언제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국제연맹(협회) 또는 그 대표(예: 등급분류 인력)를 의도적으로 오도하거나 오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51.1.2. 피의자가 언제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i) 상기의 제51.1.1호 또는 (ii)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다른 참가자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된 모든 위반 또는 위반 시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으로 공모에 가담하는 경우
 - 51.2. 제51.1.1호에 해당하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51.2.1. 선수에게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기저 질환이나 적격 장애의 존재, 특성 및/또는 정도를 주장하는 위조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51.2.2. 등급분류를 위한 평가 세션 동안 고의적으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경우
 - 51.2.3. 등급분류 패널을 오도할 의도로 평가 세션 전에(선수일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다른 참가자일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를 지치게 하는 경우
 - 51.2.4.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에서 사용하려는 스포츠 의류나 보조 장비 없이 평가 세션을 받거나, 해당 스포츠 의류와 보조 장비의 용도를 등급분류 패널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 51.2.5. 선수의 약 및/또는 의료기기/임플란트(청각 보조 장치 및/또는 안경 또는 교정 렌즈와 같은 굴절 또는 시각 교정 포함) 및/또는 의료 시술의 이용을 등급분류 패널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 51.2.6. 평가 세션 전, 중, 후에 선수의 기술, 능력 및/또는 선수의 장애의 존재, 진실성 및/또는 정도를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 51.2.7. 등급분류 패널을 오도할 의도로 평가 세션을 방해하거나 평가 세션 중에 등급분류 패널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51.2.8. 선수의 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선수 대신 평가 세션에 참석시키는 경우
 - 51.2.9. 선수가 이전에 등급분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예: 그 종목에서 이미 받은 등급이 있거나 다른 장애인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경우) 및/또는 선수의 적격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변화가 생겨 의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등급분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국제연맹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

- 51.3. 제51.1.2호에 해당하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51.3.1. 피의자가 다른 참가자로 하여금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도록 유도, 지시, 촉진, 지원, 장려, 협조, 사주, 공모하는 경우
 - 51.3.2.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했거나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위반을 조사 또는 기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 51.3.3. 다른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도록 피의자가 유도, 지시, 촉진, 지원, 장려, 돕거나, 사주하거나, 다른 참가자와 공모하는 경우
 - 51.3.4. 다른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그 위반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그 위반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 51.4.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을 기술한다:
 - 51.4.1. 피의자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제51.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 51.4.2. 피의자는 선수에게 부여된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와 상관없이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를 수 있다.
- 51.5. 의도적 허위진술은 등급분류와 장애인 스포츠의 완전성에 큰 위협을 가한다. 이는 (i)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국제연맹(협회)(및/또는 그 대표)을 속이려는 시도와 (ii) 공정하고 의미 있는 시합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이점을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적절히 조사되어야 하며, 의도적 허위진술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1.6. 각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등급분류 규약 및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의도적 허위진술의 식별, 조사 및 기소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 5 장

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

CHANGES TO CLASSIFICATION SYSTEMS

52. 등급분류 시스템의 변경 (Changes to Classification systems)
- 52.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시스템 및/또는 등급분류 과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기 전에 다음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 52.1.1.44) 패럴림픽 대회 주기, 스포츠 경기 주기, 패럴림픽 대회 자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사항이 선수, 국가연맹(협회), 국가패럴림픽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
- 52.1.2. 국가연맹(협회)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사본 제공 포함)
- 52.1.2.1. 예상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변경 근거,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선수 또는 선수 그룹(해당되는 경우), 실행 예정 일정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제안된 전환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52.1.2.2. 이러한 변경 사항이 채택되기 전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52.1.3.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52.1.3.1. 예상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변경 근거, 실행 예정 일정, 제안된 전환 규정(해당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의 영향 평가 사본, 점검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자문의 개요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 52.1.3.2. 이러한 변경 사항이 채택되기 전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52.2. 국제연맹(협회)이 제52.1.2호에 따라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국가연맹(협회)에 통지하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은 그 관할 하의 선수들이 (i)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받고, (ii)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국제연맹(협회)이 변경 사항이 실행될 것이라고 국가연맹(협회)에 통지하는 경우, 국가연맹(협회)은 그 관할 하의 선수들이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받도록 해야 한다.
- 52.3. 국제연맹(협회)이 선수의 (부)적격성,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급분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예: 최소장애기준 변경 또는 평가 방법 변경), 국제연맹(협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52.3.1. 해당 선수를 식별하고, 그들이 재평가 받을 자격이 있음을 (국가연맹(협회)을 통해) 통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제52.1.1호에 대한 주석: 특히 국제연맹(협회)은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선수의 (부)적격성,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예: 최소장애기준 또는 평가 방법의 변경)의 적절한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패럴림픽 대회 자격 기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52.3.2. 해당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후 가능일자 재검 (R-NAO)' 또는 '재검일 지정 재검(R-FRD)'으로 각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
- 52.4. 국가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 변경이 이전에 부적격으로 판명된 관할 하의 해당 선수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연맹(협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6 장

역할과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 53. 개요 (Overview)
 - 53.1. 본 6장에 나열된 역할과 책임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부과된 특정 의무에 추가로 적용된다.
- 54.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 54.1.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54.1.1.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 실행의 개발, 유지 및 모니터링
 - 54.1.2.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 및 모델 개발 및 발행
 - 54.1.3.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선수, 등급분류사 및 더 넓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등급분류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54.1.4.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등급분류의 목적, 원칙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인식 제고
 - 54.1.5. 회원 자격 조건으로 모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이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
 - 54.1.6.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의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 54.1.7.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이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 55. 국제연맹(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s)
 - 55.1. 국제연맹(협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55.1.1. 해당 스포츠의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등급분류의 목적, 원칙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인식 제고
 - 55.1.2.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급분류 규정의 개발, 실행, 정기 점검 및 발행
 - 55.1.3. 회원 자격의 조건으로 국가연맹(협회) 및 기타 회원이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55.1.4. 최소한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과 해당 규정이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국가연맹(협회), 선수, 선수지원 인력 및 등급분류사를 위한 등급분류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 (적절한 경우 선수의 참여와 함께)
 - 55.1.5. 등급분류 연구를 홍보, 시작 및/또는 검토
 - 55.1.6. 명확한 등급분류사 모집, 훈련 및 개발 경로를 개발, 실행 및 유지

- 55.1.7.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의도적 허위진술 또는 준수 문제 관련 모든 조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협력
- 55.1.8.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국가연맹(협회)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
 - 55.1.8.1. 국제연맹(협회)이 선수의 기저 건강상태와 적격 장애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정성과 관련성이 있는지와 해당 정보의 변경 사항을 국제연맹(협회)이 통보받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진단 정보를 국제연맹 (협회)에 제공한다.
 - 55.1.8.2. 선수들이 평가 세션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책임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해당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
- 56. 국가패럴림픽위원회 (NPCs)
 - 56.1. 국가패럴림픽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56.1.1. 선수가 진단 정보를 제출하거나 평가 세션에 참석하기 전에, 선수 및 선수지원 인력이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지원
 - 56.1.2. 국가연맹(협회),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에게 등급분류 정보 및 교육 자료를 배포
 - 56.1.3. 해당 국가의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등급분류의 목적, 원칙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
 - 56.1.4. 국내 등급분류 시스템 및 국내 등급분류사와 관련하여 국내 등급분류 전략의 개발을 촉진
 - 56.1.5. 국가연맹(협회),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을 대신하여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의 연락 역할을 수행
 - 56.1.6.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의도적 허위진술 또는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조사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국제패럴림픽 위원회에 협력
- 57. 등급분류 인력 (Classification Personnel)
 - 57.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 및 교육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에서의 등급분류 조직, 실행 및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여러 등급분류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
 - 57.2. 국제연맹(협회)은 규정 내에 모든 등급분류 인력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전문 행동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등급분류 인력 및 교육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이라고 한다.

- 57.3. 국제연맹(협회)은 규정 내에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의 미준수 사항을 보고하고 조사하는 절차와,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의 모든 위반과 관련하여 등급분류 인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 58. 선수 (Athletes)
 - 58.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있어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 선수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58.1.1.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규칙, 정책, 규정,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
 - 58.1.2. 등급분류 절차 및 관련 절차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참여하고 협력
 - 58.1.3. 국제연맹(협회)이 기저 건강상태와 적격장애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진단 정보를 (국가연맹(협회)을 통해)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정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지와 해당 정보의 변경 사항을 국제연맹(협회)이 통보받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진단 정보를 (국가연맹(협회)을 통해) 국제연맹(협회)에 제공
 - 58.1.4. 제25.2.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 세션 동안 최선을 다하고, 등급분류 패널이 제공한 모든 적절한 지침을 준수
 - 58.1.5. 잠재적인 의도적 허위진술에 관한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협력
 - 58.1.6. 등급분류 교육 및 연구,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
- 59. 선수지원 인력 (Athlete Support Personnel)
 - 59.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 선수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59.1.1.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규칙, 정책, 규정,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
 - 59.1.2. 선수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등급분류 절차 및 선수 등급분류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예: 등급분류사)에 대해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조성
 - 59.1.3. 적용 가능한 경우, 등급분류 절차 및 관련 절차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참여하고 협력
 - 59.1.4. 잠재적인 의도적 허위진술에 관한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협력
 - 59.1.5. 선수가 등급분류 교육 및 연구,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촉진

- 60. 기타 참가자 (Other Participants)
- 60.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 기타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60.1.1.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규칙, 정책, 규정,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
 - 60.1.2. 잠재적인 의도적 허위진술에 관한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협력

제 7 장

데이터, 모범 사례 등급분류 및 연구

DATA, BEST PRACTICE CLASSIFICATION, AND RESEARCH

- 61. 데이터 (Data)
 - 61.1.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은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국제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62.45) 모범 사례 등급분류 (Best Practice Classification)
 - 62.1. 국제연맹(협회)은 모범 사례 등급분류를 반영한 스포츠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모범 사례 등급분류란 다음을 의미한다.
 - 62.1.1. 제5.1항에 명시된 등급분류의 4단계를 채택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 62.1.2. 각 단계에서 최선의 가용 증거를 사용한다, 특히:
 - 62.1.2.1. 장애와 주요 경기력 결정 요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장애를 등급분류의 단위로 삼고, 장애가 선수의 특정 스포츠에서 필수적인 작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62.1.2.2.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예: 선수 훈련 이력, 장애, 새롭고 연습된 운동 과제의 수행, 스포츠 특화/스포츠 기술 수행).
 - 62.1.2.3. 최소한 증거에 기반한 평가를 사용한다(즉, 과학적 증거가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평가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나타냄).
 - 62.1.2.4. 가능한 한 적은 추정을 최소화 한다(가정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가정이 방어 가능하도록 보장).
 - 62.1.3. 등급분류의 각 단계에서 수행된 평가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임상 추론 및 비판적 사고의 원칙을 적용한다.
 - 62.1.4. 확립된 인간 운동 과학, 저시력 과학, 인지 과학, 스포츠 수행의 원칙과 일치한다.
 - 62.1.5. (i) 해당 스포츠에서 고려하는 각 적격 장애 및 (ii) 해당 적격 장애와 일치하는 기저 건강상태에 대한 최신 지식과 일치한다.
- 63. 등급분류 연구 (Classification Research)
 - 63.1. 국제연맹(협회)은 다음을 위해 다학제 등급분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45) 제62조에 대한 주석 : 모범 사례 등급분류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거에 기반한 평가와 임상 추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평가 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모범 사례 등급분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할 것이며, 제63.2항에서 언급된 증거 기반 등급분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3.1.1. 등급분류 시스템이 모범 사례 등급분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그리고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63.1.2. 평가 시스템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증거 기반을 개선한다.
- 63.2.⁴⁶⁾ 국제연맹(협회)은 증거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즉, 선수들에게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는 방법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각 스포츠 등급이 해당 스포츠에서 활동 제한 정도가 비슷한 적격 장애를 가진 선수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등급분류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증거 기반 등급분류는 모든 등급분류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최적의 표준이다.
- 63.3. 국제연맹(협회)은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자(선수 및 등급분류사 포함)가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 63.4. 모든 등급분류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윤리적 기준과 연구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46) 제63.2항에 대한 주석: 증거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급분류 연구는 David L. Mann, Sean M. Tweedy, Robin C. Jackson & Yves C. Vanlandewijck (2021), 장애인 스포츠의 증거 기반 등급분류를 위한 증거 분류(Classifying the evidence for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in Paralympic sport), Journal of Sports Sciences, 39:sup1, 1-6에 제시된 등급분류 연구에 대한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제 8 장

등급분류 규약의 준수

COMPLIANCE WITH THE CLASSIFICATION CODE

- 64.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의 준수 (Compliance by IPC Members)
 - 64.1. 정관 제13.1.6호에 따라, 각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권장하는 모범 사례 모델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 64.2.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등급분류 준수 및 감독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64.2.1. 준수에 대해 보고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64.2.2. 모든 비준수의 이유를 설명하고,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해당 조치를 취할 기간을 상세히 설명한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64.3. 이사회는 비준수에 대한 모든 설명과 제안된 실행 계획을 검토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준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에게 일시적인 회원 자격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64.4. 이사회는 정관 제15조에 따라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64.5.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제재 결정은 정관 제18.2항에 따라 해당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에 한해서만, 항소 재판소에 항소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5.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준수 (Compliance by RIFs)
 - 65.1.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따라, 각 공인 국제연맹(협회)은 자신이 관리하는 최소한 한 가지 종목과 관련하여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 65.2.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등급분류 준수 및 감독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필요에 따라서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공인 국제연맹(협회)은 국제패럴림픽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65.2.1. 준수 여부를 보고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65.2.2. 비준수의 이유를 설명하고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할 시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65.3.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유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공인 국제연맹(협회)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66.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 66.1.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시로 추가 규정이나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장

등급분류 규약 유효일자, 개정 사항 및 해석

CLASSIFICATION CODE EFFECTIVE DATE,
AMENDMENTS, AND INTERPRETATION

- 67. 등급분류 규약의 유효일자 (Effective Date of the Classification Code)
 - 67.1. 이 등급분류 규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예외적으로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의 동계 스포츠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유효일자).
- 68. 등급분류 규약의 개정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Code)
 - 68.1. 이사회는 등급분류 규약의 발전과 개선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68.2. 이사회는 등급분류 규약 개정 제안을 시작하고, 제안된 개정 사항에 대해 선수, 국제패럴림픽 위원회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권고를 받고 그들의 검토 및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문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 68.3. 제68.4항에 따라, 적절한 자문 후 등급분류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 사항은 승인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68.4. 이사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등급분류 규약과 실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 인쇄 및 사무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또는 문법적 측면이나 명확화를 위해 등급분류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 69. 국제표준의 개정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 69.1.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문 후 국제표준의 모든 개정 사항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표준 및 그 개정 사항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관련 국제표준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 70. 추가규정 (Supplementary regulations)
 - 70.1.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약을 보완하기 위해 패럴림픽 대회 및/또는 국제패럴림픽 위원회가 주최하거나 대리하여 조직하는 기타 경기와 관련된 추가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 71. 해석 (Interpretation)
 - 71.1.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의 공식 문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영어로 공개된다.
 - 71.2.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주석은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71.3.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공인 국제연맹(협회) 또는 정부의 기존 법률이나 법령에 대한 참조 문서가 아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 71.4. 등급분류 규약에서 정의된 용어(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는 부록 1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정관 부록 1에 설정된 해석 규정이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에 적용된다.
 - 71.5. 제39.2항을 제외하고 이 등급분류 규약은 유효일자 이전에 계류 중인 문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용어 정의

DEFINITIONS

등급분류 규약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용어는 아래에 설명된 의미를 가진다. 정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밑줄로 표시된다. 밑줄로 표시된 정의와 정관에서 정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정관에 명시된 정의가 우선한다.

보조 기구(Adaptive Equipment)는 선수의 장애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수의 특별한 요구에 맞게 조정된 도구, 장치, 또는 기술적 보조 도구를 의미하며,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굴절 또는 시각 교정 장치(안경이나 교정 렌즈 등)는 보조 기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항소(Appeal)는 제40.1.2호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다.

항소 기구(Appeal Body)는 청문회와 항소 결정을 위한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항소 재판소(Appeals Tribunal)는 정관 제66조에 설명된 재판소를 의미한다.

선수(Athlete)란 등급분류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거나,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예 :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진단 정보를 국가연맹(협회)에 제공), 관련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의미한다.

선수 지원 인력(Athlete Support Person)란 선수와 함께 작업하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스태프, 임원, 의료 및 준의료 인력, 부모, 또는 기타 인력을 의미한다.

BAC란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Board Of Appeal Of Classification)를 의미한다.

모범 사례 등급분류(Best Practice Classification)란 제62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다.

등급분류 항소심사위원회(Board of Appeal of Classification)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설립한 등급분류 항소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수석 등급분류사(Chief Classifier)는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특정 등급분류 가능일에 등급분류 업무를 지휘, 관리, 조정 및 실행하는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임명된 등급분류사를 의미한다.

등급분류는(Classification) (i)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 참가에 적격인지 결정하는 것과, (ii) 적격한 선수가 가진 장애가 관련 스포츠에 필수적인 특정 동작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스포츠 등급으로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2장 제4부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Classification Master List)은 제36.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등급분류 패널(Classification Panel)은 국제연맹(협회)이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평가 세션을 수행하고 선수의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한 등급분류사들을 의미한다.

등급분류 인력(Classification Personnel)은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분류 조직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등급분류사와 행정 담당자가 포함된다.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Classification Personnel Code of Conduct)은 제57.2항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국제연맹(협회)이 규정한 등급분류 인력에 대한 행동 및 윤리 기준을 의미한다.

등급분류 연구(Classification Research)는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향상시키거나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분석, 또는 조사를 의미한다.

등급분류사(Classifier)는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인증받아 등급분류 패널의 일원으로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복합 등급 경기(Combined Class Events)는 제38조에 따라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을 가진 선수들이 섞여서 경쟁하는 경기를 의미한다.

경기(Competition)란 하나의 규제 기관 아래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개별 이벤트를 의미한다.

준수(Compliance)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의 문서, 정신 및 의도에 부합하는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의 실행을 의미한다.

정관(Constitution)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정관을 의미하며, 때때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협동장애(Coordination Impairment)는 제8.1.1.5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인 대회(Covered Competition)는 제3.2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단 정보(Diagnostic Information)란 국제연맹(협회)이 기저 건강상태나 적격 장애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의료 기록 및/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이상운동증(Dyskinesia)은 제8.1.1.5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효일자(Effective Date)는 제67.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즉 2025년 1월 1일 또는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 동계 스포츠의 경우 2026년 7월 1일을 의미한다.

적격 장애(Eligible Impairment)는 제8조에 나와 있듯이, 영구적이며 패럴림픽 무브먼트에서 공인되고 총회에서 승인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적격 장애 평가(Eligible Impairment Assessment)는 제5.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가 세션(Evaluation Session)은 등급분류 절차의 2단계, 3단계 및 4단계를 의미한다. 즉, 제5.1조에서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듯 적격 장애 평가, 최소장애기준 평가,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배정이 포함된다.

첫 출전(First Appearance)은 제18.7.3.2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정 재검일은(Fixed Review Date) 제21.1.3호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각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들의 전체 모임을 의미한다.

이사회(Governing Board)는 정관 제6부에 설명된 기관을 의미한다.

건강상태(Health Condition)란 질병(급성 또는 만성), 장애, 부상 또는 외상을 의미한다.

근긴장항진증(Hypertonia)은 제8.1.1.5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력 저하(Impaired Muscle Power)는 제8.1.1.1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동 관절가동범위의 저하(Impaired Passive Range of Movement)는 제8.1.1.2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 기간(In-Competition)이란 국제연맹(협회)이 선수가 참가할 예정인 경기와 관련하여 등급분류 기회를 제공하는 날부터 해당 경기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지적 장애(Intellectual Impairment)는 제8.1.3호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도적 허위진술(Intentional Misrepresentation)은 제51.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연맹(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의해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장애인 스포츠의 전 세계 단독 대표자로 공인된 국제 스포츠 연맹을 의미한다.

국제연맹(협회) 항의(International Federation Protest)는 제44조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이 제기하는 항의를 의미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등급분류 규약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문서를 의미하며, 때때로 개정될 수 있다.

IPC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를 의미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IPC Member)은 정관 제2부에 따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을 의미한다.

사지결손 및/또는 사지 길이 차이(Limb Deficiency and/or Limb Length Difference)는 제8.1.1.3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학(적) 재검(Medical Review)은 제37조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소장애기준 평가(MIC Assessment)는 제5.1조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소장애기준(Minimum Impairment Criteria)은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적격 장애로 인해 생기는 최소 수준의 장애를 의미하며, 이는 각 종목별 국제연맹(협회)의 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미성년자(Minor)는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운동실조증(Motor Ataxia)은 제8.1.1.5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연맹(협회)(National Federation)은 국제연맹(협회)의 국가 회원을 의미 한다(국제패럴림픽 위원회가 현재 국제연맹(협회) 역할을 하는 스포츠의 국가연맹(협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패럴림픽 위원회를 포함함).

국가연맹(협회) 항의(National Federation Protest)는 제43조에 따라 국가연맹(협회)이 제기하는 항의를 의미한다.

국가패럴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NPC)는 정관에 따라 국제패럴림픽 위원회가 공인한 국가 조직을 의미한다.

국가의 대표(National Representative)는 국가연맹(협회)의 임직원, 직원이거나 국가연맹(협회)을 대표하거나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추후 가능일(Next Available Opportunity)는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선수가 새로운 평가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다음 등급분류 가능일을 의미한다.

부적격 장애(Non-Eligible Impairment)는 제9조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찰 평가(Observation Assessment)는 등급분류 패널이 스포츠 등급 평가의 일환으로 경기 중 선수를 관찰하여 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에 필수적인 특정 작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 독립성 (또는 운영적 독립) (Operational Independence)은 (a) 국제연맹(협회)의 이사회 구성원, 직원, 위원회 구성원, 자문위원 및 임원들, 그리고 조사 및 사전 청문과 관련된 모든 인물이 해당 기관의 회원 및/또는 서기로 임명될 수 없으며 (해당 서기가 심의 절차 및/또는 결정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b) 해당 기관은 국제연맹(협회)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청문회 및 결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기관의 회원 또는 결정에 관여하는 개인이 사건 조사 또는 사건 진행 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 외 기간 (Out-of-Competition)는 경기 기간이 아닌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장애인 선수(Para athlete)는 장애인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장애인 스포츠(Para sport)는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급분류 규약 및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를 의미한다.

패럴림픽 대회(Paralympic Games)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소유하고 승인한 주요 국제 이벤트로, 하계 및 동계 대회가 번갈아 가며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장애인 선수들이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된 장애인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이벤트이다.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Paralympic Games Sport Programme)은 패럴림픽 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장애인 스포츠를 의미한다.

패럴림픽 무브먼트(Paralympic Movement)는 정관 제2.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럴림픽 무브먼트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공인된 국제연맹(협회) 및 장애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스포츠의 홍보, 조직 및/또는 제공에 관여하는 기타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참가자(Participant)는 다음을 의미한다:

- 선수
- 선수지원인력
- 국가의 대표자
- 국제연맹(협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타 인물로, 등급분류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영구적(Permanent)이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장애를 의미하며, 주된 영향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Person)은 일반인, 법인 및 비법인체(법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이러한 인물의 법적 개인 대표자, 후임자 및 허용된 양수인도 포함된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이라는 용어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를 포함하는.

신체장애(Physical Impairment)는 제8.1.1.1목부터 제8.1.1.5목에 나열된 적격 장애를 의미한다. 즉, (i) 근력 저하 (ii) 수동 관절가동범위 저하 (iii) 사지결손 및/또는 사지 길이 차이 (iv) 저신장 (v)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협동 장애: (a) 근긴장항진증/경직 (b) 운동실조증 및/또는 (c) 이상운동증(무정위 운동증, 근긴장이상증, 무도증).

항의(Protest)는 제40.1.1호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의 패널(Protest Panel)은 항의 결과로 평가 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연맹(협회)이 임명한 등급분류 패널을 의미한다.

공인 국제연맹(협회)(Recognised International Federation, RIF)은 정관 제20.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의 자격은 없으나

패럴림픽 무브먼트 발전에 기여하는 공인 국제연맹(협회)들로 구성된 패럴림픽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패럴림픽 대회 스포츠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어서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패럴림픽 무브먼트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연맹(협회)에게 ‘공인 국제연맹(협회)’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인 국제연맹(협회)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이 아니다.’

공인 국제연맹(협회) 규정(RIF Regulations)은 공인 국제연맹(협회) 지위의 부여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규정을 의미하며, 때때로 개정될 수 있다.

저신장(Short Stature)은 제8.1.1.4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직(Spasticity)은 제8.1.1.5목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 등급(Sport Class)은 각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의해 정의된 경기의 범주를 의미하며, 선수는 그들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에 필수적인 특정 동작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등급분류된다.

스포츠 등급 평가(Sport Class Assessment)는 제5.1항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 등급 상태(Sport Class Status)는 향후 선수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가능성 여부와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 스포츠 등급에 적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팀 스포츠(Team Sport)는 경기 중 선수 교체가 허용되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견습등급분류사(Trainee Classifier)는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한 공식 교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기저 건강상태 평가(UHC Assessment)는 등급분류 절차의 1단계, 즉 제5.1항에서 설명된 평가를 의미한다.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UHC Assessor)는 제6.1항에 따라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수행하는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기저 건강상태(Underlying Health Condition)는 관련 스포츠에서 적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시각 장애(Vision Impairment)는 제8.1.2호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선수권 대회(World Championships)는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 국제연맹(협회)이 소유하거나 승인한 최고 수준의 국제 경기 또는 이벤트를 의미한다.

등급분류 인력과 교육에 대한 국제표준

p71~88

IPC CLASSIFICATION CODE &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1 JANUARY 2025)

목차

제1부: 목적 및 일반조항 (PURPOSE AND GENERAL PROVISION)	89
1. 목적 (Purpose)	89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s)	89
제2부: 등급분류 인력 역할과 역량 (CLASSIFICATION PERSONNEL ROLES AND COMPETENCIES)	89
3. 등급분류 인력 (Classification Personnel)	89
4. 등급분류 인력 역량 (Classifier Personnel Competencies)	94
제3부: 등급분류 인력의 모집, 교육, 개발 및 자격 인증 (CLASSIFICATION PERSONNEL RECRUITMENT, TRAINING,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96
5. 등급분류 인력의 모집 및 유지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Classification Personnel)	96
6. 등급분류 인력 교육 그리고 개발 (Classification Personnel training and development)	97
7. 등급분류사 자격 인증 (Classifier Certification)	97
제4부: 이해상충 및 행동 규약 (CONFLICT OF INTEREST AND CODE OF CONDUCT)	99
8. 이해상충의 확인 및 관리 (Identify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99
9.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Classification Personnel Code of Conduct)	100
부록 1: 정의 (DEFINITIONS)	101

제1부: 목적 및 일반조항 (PURPOSE AND GENERAL PROVISION)

1. 목적 (Purpose)
 - 1.1. 등급분류 인력은 등급분류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에 필수적이다. 등급분류 인력 및 교육에 관한 국제표준(본 국제표준)의 목적은 등급분류 인력의 채용, 교육, 훈련 및 개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s)
 - 1.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의 채용, 교육, 훈련 및 개발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집행 가능한 체계를 수립해야하며, 본 국제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 1.3. 이 체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함):
 - 1.3.1.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전문성 또는 경험 수준
 - 1.3.2. 등급분류 인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량
 - 1.3.3.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 인력에게 제공할 교육 및 훈련. 이를 통해 등급분류 인력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국제연맹(협회)이 요구하는 역량을 취득하고/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ii) 인증을 획득하고/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iii) 등급분류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a) 인증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및/또는 (b) 더 높은 수준의 등급분류 인력 역할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함
 - 1.3.4.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의 자격 인증 및 재인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및 등급분류사 자격인증에 부과될 수 있는 제한 사항
 - 1.3.5. 이해상충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국제연맹(협회)의 정책
 - 1.3.6.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제2부: 등급분류 인력 역할과 역량 (CLASSIFICATION PERSONNEL ROLES AND COMPETENCIES)

3. 등급분류 인력 (Classification Personnel)
 - 3.1. 국제연맹(협회)은 아래에 명시된 등급분류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
 - 3.2.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등급분류 인력이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3.3. 등급분류 위원장
 - 3.3.1.1) 등급분류 위원장은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임명된 인력으로, 해당 국제연맹

(협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지휘, 관리, 조정 및 실행하는 책임을 진다.

- 3.3.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위원장의 역할과 의무를 공유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관계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이 정보를 회원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 3.3.3. 등급분류 위원장은 최소한 다음 역할을 수행 및/또는 감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3.3.3.1. 국제연맹(협회)이 발표한 등급분류사 과정에 따라 등급분류사 교육, 훈련, 자격 인증, 재인증 및 개발을 조직하고 수행
 - 3.3.3.2. 등급분류사의 활동, 자격 인증 및 재인증을 추적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업데이트
 - 3.3.3.3. 등급분류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시스템에 기반을 둔 등급분류 연구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입력을 제공
 - 3.3.3.4. 예를 들어, 프로그램과 정책을 계획, 설계, 실행 및 검토하여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과 실행이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
 - 3.3.3.5.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분류 관련 문제 (예: 등급분류 규정 및 스포츠 기술 규정)에 대한 피드백 및 입력을 수집
 - 3.3.3.6.2) 정기적으로 스포츠 등급분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 3.3.3.7. 등급분류 규정의 변경사항을 등급분류사에게 공지
 - 3.3.3.8.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를 관리, 유지 및 업데이트하여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
 - 3.3.3.9. 등급분류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의 관련 기관 및 위원회와 협력
 - 3.3.3.10. 등급분류 관련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외부 기관(국제패럴림픽 위원회 포함)과 소통
- 3.3.4.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 자격에는 최소한 제4.4항 및 제4.8항에 나열된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3.1호에 대한 주석: 국제연맹(협회)이 일정 기간 동안 등급분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임시로 등급분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관계자 또는 관계자들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 3.3.3.7목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등급분류 위원장이 (또는 다른 등급분류 인력에게 참석을 지시하여)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기에 참석하여,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3.3.5. 등급분류 위원장은 해당 국제연맹(협회) 내의 다른 등급분류 인력 및/또는 지역조직위원회에 임명된 인력에게 대회나 등급분류 일정에 대한 특정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 3.3.6. 등급분류 위원장은 등급분류사 및/또는 수석 등급분류사로 임명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급분류 규약의 제43.7항이 등급분류 위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4. 수석 등급분류사

- 3.4.1. 수석 등급분류사는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임명된 등급분류사로, 특정 등급분류 가능일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문제를 지휘, 관리, 조정 및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4.2. 그런 맥락에서, 국제연맹(협회)은 수석 등급분류사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
 - 3.4.2.1. 특정 등급분류 가능일(경기 중 또는 경기 외)에 등급분류가 필요한 선수들을 확인
 - 3.4.2.2. 등급분류사와 견습 등급분류사들을 감독하여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그들의 자격과 능력 수준을 모니터링
 - 3.4.2.3. 국제연맹(협회) 및 필요 시 등급분류 위원장과 협의하여 항의를 관리
 - 3.4.2.4. 관련 경기 책임자와 연락하여 등급분류사들이 등급분류 가능일에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행, 숙박 및 기타 물류를 준비
 - 3.4.2.5.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선수와 선수지원인력에게 소통하고 교육
 - 3.4.2.6. 등급분류사,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에게 등급분류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i)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등급분류 패널, 항의 패널 또는 항소 기관에서 내린 모든 조사 결과; (ii) 평가 세션의 절차(자격 요건 및 최소장애기준 포함), 항의 절차 및 선수에게 지정 또는 추적 코드가 할당된 후의 절차; (iii) 의도적인 허위진술과 관련된 사항(해당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동 및 잠재적 위반 사항의 조사 및 기소 방법 포함)
 - 3.4.2.7. 특정 등급분류 일정 동안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를 관리
 - 3.4.2.8. 등급분류 일정 동안 등급분류 절차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권고

3.4.2.9. 특정 등급분류 일정에서 발생한 모든 관련 문제를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보고

3.4.3. 국제연맹(협회)은 수석 등급분류사로 임명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 자격에는 최소한 제4.4항 및 제4.7항에 나열된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3.4.4. 수석 등급분류사는 국제연맹(협회) 내의 다른 등급분류 인력 및/또는 지역 조직위원회에서 임명된 관계자에게 경기나 등급분류 일정에 대한 특정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3.4.5.3) 국제연맹이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수석 등급분류사는 해당 등급분류 일정에서 등급분류사 역할을 겸임할 수 없다.

3.4.6. 국제연맹(협회)은 다음과 같이 특정 등급분류 가능일에 대해 한 명 이상의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를 임명할 수 있다.

3.4.6.1. 각 스포츠에 적용되는 각 적격 장애 유형에 대하여(예: 신체장애, 시각장애 및/또는 지적장애) (이 경우, 관련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가 본인이 배정받은 적격 장애 유형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주요 책임을 지며, 제3.4.2호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한다.)

3.4.6.2. 등급분류가 여러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 관련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가 그들의 할당된 장소에 대해 제3.4.2호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할 주요 책임을 진다.)

3.4.7.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서 '수석 등급분류사'를 언급시 국제연맹(협회)이 임명한 모든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들을 포함한다.

3.4.8.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들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 수석 등급분류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3.5. 등급분류사

3.5.1. 등급분류사란, 등급분류 패널의 일원으로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인증되고 공인된 인력을 의미한다.

3.5.2.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사로 훈련을 시작하려는 대상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3) 제3.4.5호에 대한 주석: 수석등급분류사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급분류패널 외에 수석등급분류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다. 이는 등급분류일정에서 두 명 이상의 등급분류 패널이 활동하는 경우에 특히 해당한다. 그러나 수석 분류사는 운영상의 어려움(예: 등급분류사 질병, 취소 또는 여행 지연)이 있는 경우 동일한 등급분류 일정에서 등급분류사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 3.5.3. 국제연맹(협회)의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 등급분류사는 제4.3항에 명시된 최소 등급분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에게 추가 자격 및/또는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추가 요구 사항을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3.5.4. 국제연맹(협회)은 교육 및 자격 인증 절차에서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진 등급분류사(의무 등급분류사)와 기술/스포츠 경험을 가진 등급분류사(기술 등급분류사)를 구분할 수 있다(단, 이러한 구분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의무 등급분류사와 기술 등급분류사에 대한 추가 등급분류사 역량은 각각 제4.5항과 제4.6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 3.5.5.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의무 등급분류사와 기술 등급분류사를 구별하는 경우, 평가 세션의 2단계와 3단계(각각 적격 장애 평가 및 최소 장애기준 평가)는 의무 등급분류사가 일차적 책임을 갖는 것이 권장되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기술 등급분류사가 지원할 수 있다.
- 3.5.6. 모든 등급분류사는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평가 방법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3.5.7.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 국가연맹(협회)의 규칙에 따라, 등급분류사가 국내 등급분류사가 되어 국내 수준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3.6. 견습 등급분류사

- 3.6.1. 견습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로의 공식 교육 절차를 진행 중인 인력을 의미한다. 국제연맹(협회)은 또한 '견습 등급분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등급분류사를 식별할 수 있다: (i) 현재 등급분류사의 자격 인증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며 (ii) 그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추가 교육/훈련을 진행 중인 경우
- 3.6.2. 국제연맹(협회)은 견습 등급분류사를 위해 교육자/멘토를 임명할 수 있다. 국제연맹(협회)은 규정에 교육자/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명시해야 한다.
- 3.6.3. 국제연맹(협회)은 견습 등급분류사를 등급분류 패널 또는 인증된 교육자/멘토의 감독 하에 일부 또는 모든 등급분류 구성 요소에 참여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 3.6.4. 견습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 패널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7.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 3.7.1. 등급분류 규약 제6.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맹(협회)은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에게 실시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7.2.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가 (i) 기저 건강상태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ii) 적절한 비밀 유지 약정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8. 기타 등급분류 인력

국제연맹(협회)은 위에서 나열된 인력 외에도 등급분류 활동이나 개발(등급분류 연구, 교육, 행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역할을 포함한 기타 등급분류 인력을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

3.9. 국내 등급분류사

국내 등급분류사는 국가연맹(협회)에 의해 국내 수준에서 등급분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력이다. 국제연맹(협회)에서 등급분류사로 인증받지 않는 한, 국내 등급분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 수준의 등급분류를 수행할 수 없다.

4. 등급분류 인력 역량 (Classifier Personnel Competencies)

4.1. 국제연맹(협회)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4.1.1. 필요한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역량 (최소한 제 4.3항에 명시된 역량을 포함해야 함)

4.1.2. 필요한 등급분류사 역량 (최소한 제4.4항에 명시된 역량을 포함해야 함)

4.1.3. 수석 등급분류사와 등급분류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추가 역량(최소한 제4.7항과 제4.8항에 각각 명시된 추가 역량을 포함해야 함)

4.2.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등급분류 인력이 필요한 역량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국제 표준에 명시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역량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4.3.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 역량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3.1.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

4.3.1.1.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을 포함한 관련 스포츠와 적용 규정;

4.3.1.2.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 그리고

4.3.1.3.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및 특히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리;

4.3.2. 진단 정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자격(의료 문서 검토 및 진단 검사 해석 포함)이 필요;

4.3.3. 관련 건강 상태와 신체적, 지적, 시력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

4.3.4. 복합적인 의학적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4.3.5. 적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건강 상태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의료 문서를 식별하는 능력과 등급분류 과정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기타 정보가 필요
- 4.3.6. 예를 들어 추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저 건강상태 평가자의 의견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그리고
- 4.3.7. 기저 건강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능력이 필요.
- 4.4. 등급분류사 역량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1.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 4.4.1.1. 관련 스포츠와 그 규정(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 포함)
 - 4.4.1.2. 등급분류 규약과 국제표준
 - 4.4.1.3.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및 특히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리
 - 4.4.2. 국제연맹(협회)이 결정한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문 자격, 경험 수준, 기타 기술, 역량 및/또는 능력(예를 들어, 신체적 및/또는 인지적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3. 등급분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영어구사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4. 효과적인 대인관계 및 팀워크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5. 효과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4.5. 의무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한 등급분류사 역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5.1.⁴⁾ 해당 스포츠에서 적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 건강상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의사 자격
 - 4.5.2.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스포츠에서 적격 장애의 임상적 징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 4.6. 기술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한 등급분류사 역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6.1. 운동선수의 적격 장애가 스포츠에서 기본적인 특정 동작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
 - 4.6.2.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광범위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배경지식
 - 4.6.3.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최소 연수의 코칭 경험 또는 공인 장애인 스포츠 훈련, 체육 교육, 스포츠 과학, 생체역학, 운동학과 관련된 자격, 또는 해당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춘 공신력 있는 학위 보유.

4) 제4.5.1호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관련 의료 자격에는 시각 장애를 평가하는 의무 등급분류사의 경우 안과 의사 자격, 지적 장애를 평가하는 의무 등급분류사의 경우 심리학자 자격이 포함된다.

- 4.7. 등급분류사 역량 외에도 수석 등급분류사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추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4.7.1. 국제연맹(협회)에서 지정하는 최소 기간 이상의 관련 스포츠에서의 등급분류사 경험
 - 4.7.2. 등급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 4.7.3. 등급분류사,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에게 등급분류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영어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
 - 4.7.4. 등급분류사에게 교육이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기술
 - 4.7.5. 효과적인 관리 기술
 - 4.7.6. 효과적인 조직 기술.
- 4.8. 등급분류 위원장은 등급분류사 역량 외에도 다음의 최소한의 추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4.8.1. 국제연맹(협회)에서 결정한 장애인스포츠의 등급분류사로서의 최소 경험 연수 (동일한 장애인스포츠가 권장됨). 그러나 두 명 이상의 관계자가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 그 중 한 명은 반드시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
 - 4.8.2. 제4.7.2호부터 제4.7.6호까지의 역량
 - 4.8.3.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에서 입증 가능한 리더십 기술, 예를 들어: 등급분류의 행정 및 관리 규정,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또는 수정 등급분류 연구 등급분류 교육 및 훈련 등급분류사 멘토링
 - 4.8.4. 등급분류사 교육 및 자격 인증에서의 경험과 지속적인 참여, 예를 들어 기본 및 고급 워크숍에서 강의 및 감독/멘토링 강사

제3부: 등급분류 인력의 모집, 교육, 개발 및 자격 인증 (CLASSIFICATION PERSONNEL RECRUITMENT, TRAINING,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 5. 등급분류 인력의 모집 및 유지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Classification Personnel)
 - 5.1.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능력을 갖춘, 충분한 수의 등급분류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연맹 (협회)은 다음 사항을 다루는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
 - 5.1.1. 잠재적인 견습 등급분류사를 모집하는 방법
 - 5.1.2. 등급분류 인력을 임명하는 방법(개별 등급분류 패널에 등급분류사를 임명하는 방법과 등급분류 위원장 및 수석 등급분류사를 각각의 역할에 임명하는 방법

- 5.1.3. 기존의 등급분류 인력을 유지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방법
- 5.1.4. 등급분류사의 복지를 관리하는 방법, 특히 그들을 학대, 괴롭힘,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 5.1.5. 비활동 상태의 등급분류 인력을 다시 참여시키는 방법
- 6. 등급분류 인력 교육 그리고 개발 (Classification Personnel training and development)
 - 6.1.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 개발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여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6.1.1. 국제연맹(협회)이 요구하는 역량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6.1.2. 자격 인증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6.1.3. 등급분류에서의 기술과 경험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등급분류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등급분류 인력 역할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제연맹(협회)은 이러한 모든 훈련과 교육의 세부 사항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 6.2.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 및 국가패럴림픽위원회가 국내 등급분류사를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 6.2.1. 적절한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사 및 견습 등급분류사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국가연맹(협회)과 국가패럴림픽위원회가 국내 등급분류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6.2.2.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 및 국가패럴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 등급분류사가 국제 등급분류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 6.2.3. 국제연맹(협회)은 국가연맹(협회)에 등급분류사 및 견습 등급분류사 교육 세션 일정을 충분한 통지와 빈도로 제공하여 국가연맹(협회)이 견습 등급분류사를 찾아 해당 교육 세션에 참석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등급분류사 자격 인증 (Classifier Certification)
 - 7.1. 등급분류사 자격 인증은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가 국제연맹(협회) 기준의 등급분류사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 7.2. 국제연맹(협회)들은 규정에 등급분류사의 자격 인증에 특정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7.2.1. 등급분류사가 평가할 수 있는 적격 장애 유형(즉, 신체 장애, 시각 장애 및/ 또는 지적 장애)에 대한 제한

- 7.2.2. 등급분류사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단계 및/또는 평가 세션 내의 평가 범위에 대한 제한
- 7.2.3. 등급분류사가 자격 인증을 갖추고 등급분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기나 이벤트의 수준에 대한 제한
- 7.2.4. 등급분류사가 의무 등급분류사 또는 기술 등급분류사로 자격 인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제한(해당되는 경우)
- 7.2.5. 자격 인증이 유효한 기간에 대한 제한, 그리고 향후 재인증 여부에 따른 제한
- 7.3. 국제연맹(협회)이 규정에 자격 인증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7.3.1. 규정 내에서 (i)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등급분류사가 보여야 하는 추가 역량을 명시하고 (ii) 국제연맹(협회)이 그 추가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 7.3.2. 다음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i) 개별 등급분류사의 자격 인증에 부과된 제한을 기록할 수 있는 체계 (ii) 등급분류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자격 인증 범위를 벗어난 등급분류를 수행하지 않게 하는 적절한 시스템(다만, 견습 등급분류사로서 해당 등급분류의 인증을 위한 교육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
- 7.4.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7.4.1. 등급분류사 자격 인증 및 재인증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 특히 등급분류사 역량(그리고 자격 인증에 적용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역량)이 자격 인증 및 재인증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 지에 대한 세부 사항
 - 7.4.2. 제7.5.2호에 추가로 설명되는 자격 인증 철회 절차도 포함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 및 처리하기 위한 절차
- 7.5. 특히,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7.5.1. 등급분류사가 관련 역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급분류사의 자격 인증을 검토해야 한다.
 - 7.5.2. 등급분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급분류사 자격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i) 국제연맹(협회)이 해당 등급분류사가 요구되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ii)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을 위반할 경우
 - 7.5.3. 제 7.5.2 (i) 목에 따라 자격 인증이 철회된 등급분류사는, 이후 국제연맹(협회)이 요구되는 등급분류사 역량을 다시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인증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제4부: 이해상충 및 행동 규약 (CONFLICT OF INTEREST AND CODE OF CONDUCT)

8. 이해상충의 확인 및 관리 (Identify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 8.1. 국제연맹(협회)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윤리 규약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연맹(협회) 자체의 윤리 규약/행동 규약과 일치하는 이해상충의 확인 및 관리 정책을 등급분류 규정에 마련하고 채택해야 한다.
 - 8.2. 그 정책의 일부로서,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그 정의에는 최소한 등급분류 인력의 객관성, 판단 또는 등급분류 책임을 수행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른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 이해관계 및/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8.3.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의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확인 및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등급분류 인력은 등급분류 인력 역할을 수행할 때 객관적인 결정이나 평가를 내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러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과거/현재의 개인적, 직업적 역할, 직위 및 관계를 국제연맹(협회)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등급분류 인력에 대한 공개 의무는 국제연맹(협회)이 등록 상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 8.4.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에 의한 공개가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예에는 등급분류 인력이 국가연맹(협회)의 임원, 직원 또는 기타 대표 및/또는 국가연맹(협회)을 대신하여 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유급이든 자발적이든 국가연맹(협회)이나 국가 패럴림픽위원회에서의 다른 역할 역시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8.5. 국제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이 단독 재량으로 등급분류 인력이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 8.6. 국제연맹(협회)은 국제연맹(협회)의 관점에서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는 등급분류 인력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또는 등급분류 인력의 임명을 철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8.7.⁵⁾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하단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5) 제8.7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인력이 국가대표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최근까지 해당 역할을 수행한 경우, 실제적, 인지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위 제한 사항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탁구 국제 선수는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장애인스포츠에서도 등급분류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역할에서 은퇴한 후에는 즉시 다른 장애인스포츠에서 등급분류사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 탁구에서는 은퇴 후 4년이 지나야 등급분류사가 될 수 있다.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팀 코치나 국가대표팀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탁구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i) 등급분류사가 되기 위한 실습 교육을 시작하는 것(즉, 견습 등급분류사로서 평가 세션에 참여하는 것 포함); (ii) 등급분류사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것; (iii)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

8.7.1. 현재 해당 장애인 스포츠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 선수, 또는 해당 장애인 스포츠에서 은퇴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선수

8.7.2. 해당 장애인 스포츠에서 활동 중인 국가 대표팀의 코치나 보조 코치, 또는 해당 장애인 스포츠에서 은퇴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코치

8.7.3. 동일한 장애인스포츠에서 국가대표팀이나 국제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해당 스포츠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다가 2년 이내에 은퇴한 기타 선수지원인력(예: 팀 물리치료사, 의사, 심리학자, 마사지 치료사 등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8.8. 명확히 하기 위해, 제 8.7항은 해당 대상자들이 국내 등급분류사로서 훈련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8.9. 등급분류 인력은 자신이 등급분류사로 활동하는 경기 및 등급분류 기회에서, 등급분류 절차 또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역할이 등급분류사의 역할과 책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등급분류사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9.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Classification Personnel Code of Conduct)

9.1. 등급분류 인력의 전문적인 행동은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규정에 모든 등급분류 인력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행동 및 윤리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은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으로 불린다.

9.2.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등급분류 인력이 관련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9.3. 각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윤리 규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 자체의 윤리 규약(또는 유사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9.4. 각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은 등급분류 인력에게 다음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9.4.1. 등급분류 코드와 국제 표준,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을 준수할 것

9.4.2. 국제연맹(협회)의 윤리 규약(또는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9.4.3. 등급분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인 평가자로서 행동할 것

9.4.4. 모든 선수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

등급분류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역할에서 은퇴한 후에는 각각 4년 또는 2년이 지나면 장애인 탁구에서도 등급분류사가 될 수 있다.

- 9.4.5. 선수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복지를 중시할 것
 - 9.4.6. 모든 선수에 대해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능숙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
 - 9.4.7. 모든 선수와 선수 지원 인력을 존중하고, 등급분류 절차 동안 공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9.4.8. 등급분류 인력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과 신체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국제연맹(협회)에 통보할 것
 - 9.4.9. 등급분류 절차 동안 우수한 위생과 청결을 유지할 것
 - 9.4.10.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이득이나 혜택을 얻지 않을 것
 - 9.4.11. 등급분류 규약에 따라 선수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
 - 9.4.12. 국제연맹(협회)의 모든 세이프가드 규정을 준수할 것
- 9.5. 국제연맹(협회)은 등급분류 인력 행동 규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등급분류 인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부록 1: 정의 (DEFINITIONS)

등급분류 규약에 정의된 용어(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와 부록 1에 명시된 해석 규정이 국제 표준에 적용된다. 국제 표준에 특정한 추가 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자격 인증(Certification)은 제7.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사 역량을 충족했음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인증(Certify)'와 '인증됨(Certified)' 이라는 단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등급분류 위원장(Head of Classification)은 제3.3.1호에서 부여된 의미와 같이,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임명된 인력으로,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 업무를 방향 설정, 관리, 조정 및 실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 등급분류사(International Classifier)는 '등급분류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국내 등급분류사와는 구별된다.

의무 등급분류사(Medical Classifier)는 제3.5.4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의료 지식을 갖춘 등급분류사를 의미한다.

국내 등급분류사(National Classifier)는 국가연맹(협회)에 의해 교육받고 인증되며, 국내 수준의 등급분류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력을 의미한다. 국내 등급분류사의 역할은 제3.5항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재인증(Re-Certification)은 국제연맹(협회)이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사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술 등급분류사(Technical Classifier)는 제3.5.4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기술적/스포츠 경험을 가진 등급분류사를 의미한다.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

p89~108

IPC CLASSIFICATION CODE &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1 JANUARY 2025)

목차

1. 목적 (Purpose)	107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	107
3.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107
4. 보고 및 협조 의무 (Obligations to report and cooperate)	109
5. 조사 (Investigations)	110
6. 절차 (Proceedings)	111
7. 기밀유지 (Confidentiality)	114
8. 제재 (Sanctions)	114
9. 결정 (Decisions)	120
10. 항소 (Appeals)	121
11. 공개 (Public Disclosure)	121
부록 1: 정의 (DEFINITIONS)	122

1. 목적 (Purpose)
 - 1.1. 등급분류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도적 허위진술은 등급분류 및 장애인 스포츠의 진실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그에 해당한다: (i) 등급분류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국제연맹(협회)(및/또는 그 대표자들)을 오도하거나, (ii)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 따라서 의도적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의도적 허위진술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2.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목적은 국제연맹(협회)이 직권으로 피의자의 의도적 허위진술을 식별,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세부 규정 및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 1.3. 이러한 과정은 등급분류와는 별개의 과정이며, 반드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본 국제표준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는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 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검증(단, 필요한 경우 수정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필요로 하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특정 위반 행위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단, 필요한 경우 제제 가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
 - 2.1. 각 국제연맹(협회)은 본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절차를 등급분류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 2.2. 국제연맹(협회)은 본 국제표준에 따른 책임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지만, 위임한 모든 사항이 본 국제표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제연맹(협회)에 있다. 국제연맹(협회)이 다른 국제연맹(협회)외에 다른 인력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당사자가 본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위임 조건의 일부로 요구해야 한다.
3. 의도적 허위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 3.1. 의도적 허위진술은 등급분류 규약 제51.1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 51.1. 다음은 의도적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 51.1.1. 피의자가 언제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국제연맹(협회) 또는 그 대표(예: 등급분류 인력)를 의도적으로 오도하거나 오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51.1.2. 피의자가 언제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i) 상기의 제51.1.1호 또는 (ii)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다른 피의자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된 모든 위반 또는 위반 시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으로 공모에 가담하는 경우
 - 3.2. 의도적 허위진술의 예시들은 등급분류 규약 제51.2항 및 제51.3항에 나와 있다:
 - 51.2. 제51.1.1호에 해당하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51.2.1. 선수에게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기저 질환이나 적격 장애의 존재, 특성 및/또는 정도를 주장하는 위조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51.2.2. 등급분류를 위한 평가 세션 동안 의도적으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경우
 - 51.2.3. 등급분류 패널을 오도할 의도로 평가 세션 전에 (선수의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를 지치게 하는 경우
 - 51.2.4. 국제연맹(협회)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에서 사용하려는 스포츠 의류나 보조 장비 없이 평가 세션을 받거나, 해당 스포츠 의류와 보조 장비의 용도를 등급분류 패널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 51.2.5. 선수의 약 및/또는 의료기기/임플란트(청각 보조 장치 및/또는 안경 또는 교정 렌즈와 같은 굴절 또는 시각 교정 포함) 및/또는 의료 시술의 이용을 등급분류 패널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 51.2.6. 평가 세션 전, 중, 후에 선수의 기술, 능력 및/또는 선수의 장애의 존재, 진실성, 및/또는 정도를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 51.2.7. 등급분류 패널을 오도할 의도로 평가 세션을 방해하거나 평가 세션 중에 등급분류 패널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51.2.8. 선수의 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선수 대신 평가 세션에 참석시키는 경우
 - 51.2.9. 선수가 이전에 등급분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예: 그 종목에서 이미 받은 등급이 있다거나 다른 장애인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경우) 및/또는 선수의 적격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변화가 생겨 의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등급분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국제연맹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
- 51.3. 제51.1.2호에 해당하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51.3.1.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로 하여금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도록 유도, 지시, 촉진, 지원, 장려, 협조, 사주, 공모하는 경우
 - 51.3.2.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했거나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위반을 조사 또는 기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51.3.3. 다른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도록 피의자가 유도, 지시, 촉진, 지원, 장려, 돕거나, 사주하거나,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는 경우

51.3.4. 다른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제8.2.3호에 따라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그 위반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그 위반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

3.3. 등급분류 규약 51.4항은 이를 확인한다:

51.4.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을 기술한다:

51.4.1.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제51.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51.4.2. 피의자는 선수에게 할당된 스포츠 등급, 및/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와 상관없이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를 수 있다.

4. 보고 및 협조 의무 (Obligations to report and cooperate)

4.1. 각 피의자와 각 국가연맹(협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4.1.1. 상식선에서 증거가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다음 사항들의 어떤 정보라도, 해당 국제연맹(협회)에 신속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4.1.1.1. 의도적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피의자(본인 포함)가 접근하거나 초대하는 경우 및/또는

4.1.1.2. 피의자(본인 포함)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계획하거나 의뢰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 사실 또는 문제

4.1.2.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해당 조사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의 일환으로 모든 정보, 데이터 및/또는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연맹(협회) 및/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조사에 신속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4.1.3. 의도적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이 제기하는 모든 절차에 신속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4.1.4. 그러한 조사 또는 절차를 차단, 방해, 지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좌절시키려는 목적 또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어떠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도 하지 않아야 한다.

- 4.2. 각 국제연맹(협회)은 제4.1항을 준수하지 않는 피의자 및 국가연맹(협회)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또는 다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4.3. 각 국제연맹(협회)은 요청을 받으면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i) 의도적 허위진술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제연맹(협회)이 접수한 모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기타 정보, (ii) 그러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 (iii) 의도적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고 완료된 모든 조사 및 절차에 대해 업데이트된 사항들.
5. 조사 (Investigations)
- 5.1.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 개시를 위해 피의자에게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피의자는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2. 제5.4.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제연맹(협회)은 의도적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조사할 책임이 있다.
- 5.3. 피의자가 두 개 이상의 국제연맹(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것을 처음 인지한 국제연맹(협회)이 1차 조사 책임을 갖는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제연맹(협회)이 의도적 허위진술로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어느 국제연맹(협회)이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지 결정할 수 있다.
- 5.4.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절대적인 재량으로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 5.4.1. 의도적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연맹(협회)에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질의 및 조사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5.4.2.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인지한 의도적 허위진술 혐의와 관련하여 국제연맹(협회)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국제연맹(협회)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정한 적절한 기한 내에 의도적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규정 미준수의 심각한 행위로 간주된다.
- 5.4.3.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의도적 허위진술 의심 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자체 결정에 따라 또는 국제연맹(협회)의 요청이나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 5조의 나머지 부분에서 국제연맹(협회)에 대한 언급은 문맥상 필요한 경우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 5.5. 각 조사의 목적은 (i)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ii) 다른 피의자가 해당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고의적 공모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증거로 발전시키며,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추가 심문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 5.6. 국제연맹(협회)은 각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사 각 주요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열어두고 고려해야 하며, 의도적 허위진술의 가능한 증거 뿐만 아니라 소명 자료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도 함께 수집해야 한다.
- 5.7.1)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피의자에게 조사의 일환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 시기는 국제연맹(협회)이 결정한다.
- 5.8. 국제연맹(협회)은 모든 피의자 및 모든 국가연맹(협회)에 문서, 정보 및/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9.2) 조사 과정에서 국제연맹(협회)이 의도적 허위진술을 범했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 피의자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추가 피의자를 포함하도록 조사를 확대하거나 (대안으로) 별건 조사로 진행할 수도 있다.

6. 절차 (Proceedings)

- 6.1. 제6.6항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통보되어 승인된 구체적이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국제연맹(협회)의 자체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6.2.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i)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해 소명이 요구되는 혐의를 저질렀거나, (ii) 상기 제4.1.2호 및 제5.4.3호에 따른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피의자에 대해, 절대적인 재량으로 국제연맹(협회)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해당 국제연맹(협회)이 적정한 기한 내에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정한 해당 징계 절차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는 심각한 규정 미준수 행위로 간주된다.
- 6.3.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이 제기한 징계 절차는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일차 심의 기구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6.4.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6.4.1. 국제연맹(협회)으로부터 운영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 6.4.2.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의도적 허위진술 문제를 심리하기에

1) 제5.7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이 조사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거나, 국제연맹(협회)의 조사가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사의 일환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하기 제6.7.3호에 기술된 혐의 통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5.9항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이 팀 스포츠의 팀원 중 한 명이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조사를 확대하여 (i) 같은 팀의 다른 팀원 일부 또는 전부를 및/또는 (ii) 해당 팀에 연결된 모든 추가 피의자를 포함할 수 있다. 혹은 (대안으로) 각 팀원들이나 팀 관계자에 대한 별건 조사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6.5.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청문회 패널은 일차 심의 기구의 위원들 중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명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한 명의 위원이 청문회 패널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일차 심의 기구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청문회 패널로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i) 현재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사일 경우, (ii) 해당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사실에 관여한 과거가 있는 경우, (iii) 기타 공정성 또는 독립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 6.6.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징계 절차는 (i) 의도적 허위진술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ii) 의도적 허위진술이 발각된 후 2년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개시되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혐의 통지서 (Notice of Charge)

- 6.7. 국제연맹(협회)이 의도적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에게 혐의 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면서 (i)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과 (ii)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도 사본을 보내야 한다. 혐의 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6.7.1.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기타 관련 정보
 - 6.7.2. 혐의가 유지될 경우 국제연맹(협회)이 부과해야 한다고 밝힌 제재.
 - 6.7.3. 피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6.7.3.1. 혐의를 인정하고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제재를 수락할 권리
 - 6.7.3.2.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또는 경감 요청)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에서 제재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권리
 - 6.7.3.3. 혐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혐의가 유지될 경우 제재내용과 함께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을 받을 권리
 - 6.7.4. 피의자가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 기한(수령인이 혐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기한이 설정되어야 함).
- 6.8. 피의자에게 혐의 통지서를 보낸 후, 국제연맹(협회)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피의자에게 새로운 사실/정보에 대응할 적절한 기회가 담보되어야 한다.
- 6.9. 피의자에게 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의 신원과 혐의를 받고 있는

의도적 허위진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청문회 없이 혐의 해결 (Resolution of charges without a hearing)

- 6.10. 피의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 전의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제연맹(협회)은 제9.4항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 6.10.1. 혐의를 인정하고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제재를 수락할 경우(또는 국제연맹(협회)이 제안한 기타 제재를 수락할 경우)
- 6.10.2.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이럴 경우 무응답은 다음의 사항들로 간주된다: (i)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가 결정한 혐의 및/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 포기, (ii) 혐의 인정, (iii)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제재를 수용)
- 6.11. 국제연맹(협회)은 일차 심의 기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혐의 통지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 피의자가 소속된 국가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기소 철회 사실과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은 그러한 철회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 6.12.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 6.12.1. 혐의 통지서 철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과 관련된 전체 조사 파일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조사 파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과 함께).
- 6.12.2. 전체 조사 파일 (및 모든 필요한 번역본들)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혐의 통지서 철회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는 국제연맹 (협회)이 지정한 항소 기관(하기 제10조 참조)에 제기해야 한다.

청문회(Hearing)

- 6.13. 피의자가 혐의 통지서에 명시된 혐의 및/또는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의자는 혐의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요약 형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 6.14. 피의자가 분쟁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혐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또는 혐의 통지서에 명시되거나 국제연맹(협회)이 합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제연맹(협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 6.15. 또한 국제연맹(협회)은 언제든지 단독 재량에 따라 분쟁 사안을 일차 심의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 6.16. 제6.17항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는 국제연맹(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 하에 있는 피의자와 관련된 의도적 허위진술 사건을 청문하고 판결을 내린다.

6.17. 의도적 허위진술의 경우,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의 절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6.17.1. 당사자(또는 그 증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또는 출석했지만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 일차 심의 기구는 그 답변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17.2. 일차 심의 기구는 증거(사실 또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 포함)의 인정 여부 및 관련성, 증거에 부여할 가중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어떠한 사법 또는 증거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6.17.3.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6.17.4.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 또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50% 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개연성이 입증 되어야 한다.

7. 기밀유지 (Confidentiality)

7.1. 제7.2항, 9조 및 11조에 따라, 의도적 허위진술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국제연맹(협회)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기밀 대상은 모든 문서, 증거, 제출물 및 진행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본 국제표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증인, 전문가, 참관인 또는 기타 피의자 또는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 또는 항소 기관의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절차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연맹(협회)은 절차의 대상인 피의자(또는 그 측근 또는 대표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거나 그에 따른 공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7.2. 국제연맹(협회)은 어느 단계에서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제 표준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기밀로, 필요한 인력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국제연맹(협회)의 기능 수행(이에는 이 국제 표준에 따른 범죄 조사 및 기소 포함) 및/또는 패럴림픽 무브먼트 또는 패럴림픽 스포츠의 무결성과 명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인력들에는 국제연맹, 다른 국제연맹,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그리고 조사나 규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들 내에 있는 적절한 인력들이 포함된다.

8. 제재 (Sanctions)

8.1.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는 본 제8조에 명시된 제재를 받게 된다.

8.2. 개별 피의자에 대한 제재

결과의 실격 (Disqualification of results)

- 8.2.1.³⁾ 피의자가 경기 도중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피의자가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개별 결과의 실격으로 이어지며 메달, 포인트, 상금의 몰수를 포함한 모든 결과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
- 8.2.2. 의도적 허위진술이 발생한 날로부터 획득한 피의자의 다른 모든 개인전 경기 결과는 메달, 포인트, 상금의 몰수를 포함한 모든 결과와 함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실격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결과의 실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결과가 의도적 허위진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의도적 허위진술의 심각성 등이 포함된다.

자격정지 기간 (Period of ineligibility)

- 8.2.3. 기본 자격정지 기간은 4년이며 다음과 같이 증감될 수 있다:
 - 8.2.3.1. 위반의 심각성 및 가중되는 상황의 진실성에 따라 기간이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가중될 수 있음
 - 8.2.3.2. 위반의 심각성 및 정상 참작 사유의 진실성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부과된 자격 정지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단, 제8.3.1호, 제8.4.2호, 제8.4.3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 감경될 수 있음).
- 8.2.4.⁴⁾ 가중 사유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 8.2.4.1. 피의자의 나이와 경험, 특히 등급분류 과정과 관련된 경험
 - 8.2.4.2. 피의자의 반성 부족
 - 8.2.4.3.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8.2.4.4. 의도적 허위진술이 해당 시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8.2.4.5.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반복해서 및/또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8.2.4.6. 의도적 허위진술이 다른 피의자가 포함된 더 광범위한

3) 제8.2.1.호 및 제8.2.2.호에 대한 주석: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른 선수가 (선수 본인 또는 국가연맹(협회)이나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와 관련된) 본선 진출 자격 슬롯을 획득했으나 그 결과가 실격 처리된 경우, 국제연맹(협회)는 해당 슬롯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자체 규정에 명시할 수 있다.

4) 제 8.2.4호에 대한 주석: 여기에 설명된 상황 및 행위의 예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기타 유사한 상황 또는 행위가 더 긴 자격정지 기간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8.2.4.7.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의 적발 또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기만적이거나 방해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2.5.5) 감경 사유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8.2.5.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이전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8.2.5.2. 피의자의 징계 기록에서 정상 참작할 사항이 있는 경우

8.2.5.3.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8.2.5.4. 해당 시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도적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 정상 참작 사유에는 제8.4항에서 별도로 다루는 자발적
인정이나 실질적인 도움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8.2.6. 자격정지 기간은 국제연맹(협회)(합의된 경우) 또는 일차 심의 기구(이의가
제기된 경우)가 지정한 관련 결정일 또는 그에 준한 날짜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 및 공인된 국제연맹(협회)들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집행되어야 한다.

재정적 결과 (Financial consequences)

8.2.7. 국제연맹(협회)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비용의 회수 또는
재정적 제재를 비례에 맞게 부과할 수 있다. 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비용 회수 또는 재정적 제재는 본 국제
표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또는 기타 제재를 감경하는 근거로
간주될 수 없다.

기타 제재 (Other sanctions)

8.2.8. 국제연맹(협회)(합의된 경우) 또는 일차 심의 기구(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비례에 맞는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8.3. 다중 위반 사항

8.3.1.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에게 다음의 기간 동안 자격이

5) 제8.2.5호에 대한 주석: 여기에 설명된 상황 및 행위의 예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기타 유사한 상황 또는 행위는 또한
자격정지 기간의 단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정지된다:

8.3.1.1. 재범으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이 원래의 2배로 부여된다.

8.3.1.2. 3회 이상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이 박탈된다.

8.3.2. 6)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이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피의자가 제6.7항에 따라 혐의 통지서를 받은 후 또는 국제연맹(협회)이 혐의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 추가적인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이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은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가중 상황 적용을 포함하여 더 중한 제재가 부과되는 위반을 기준으로 제재가 부과된다.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이 발생한 시점 이전의 모든 대회의 결과는 제8.2.1호, 제8.2.2호에 명시된 대로 실격 처리된다.

8.3.3. 국제연맹(협회)이 피의자가 이전의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으로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8.4. 자격정지 기간의 경감 혹은 유예 가능성

자발적 인정 (Voluntary admission)

8.4.1.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국제연맹(협회)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의도적 허위진술 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이 해당 시점에 의도적 허위진술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증거인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즉, 가중 또는 경감 요인에 따른 조정까지 반영된 후)의 최대 절반까지만 단축될 수 있다.

8.4.2.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국제연맹(협회)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적정한 기간 내에 의도적 허위진술 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즉, 가중 또는 경감 요인에 따른 조정까지 반영된 후)의 최대 1/4까지만 단축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 (Substantial Assistance)

8.4.3. 의도적 허위진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6) 제8.3.2호에 대한 주석: 동일한 규정은 제재가 부과된 후, 즉 국제연맹(협회)이 첫 번째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의도적 허위진술 위반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은 두 위반이 한꺼번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하며, 여기에는 가중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의도적 허위진술 사건을 제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 소속 국제연맹(협회)의 재량에 따라 유예될 수 있다. 해당 국제연맹(협회)은 본 제8.4.3호에 따라 내려진 유예에 대한 모든 결정을 피의자,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는데, 피의자와 피의자의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결정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항소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하기 제10조 참조). 단, 해당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그 결정과 관련된 전체 조사 파일의 사본(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조사 파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포함)을 이전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사 파일의 사본(모든 번역본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전체 조사 파일(및 모든 필요한 번역본들)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8.4.3.1. 7) 제8.4.3호의 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피의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i) 다른 피의자의 의도적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서명된 서면 진술서 또는 녹음된 인터뷰를 통해 완전히 공개하고, (ii) 해당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건 또는 사안의 조사 및 판결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연맹(협회) 또는 청문회 패널이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에서 증언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진행중인 절차나 사례 제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8.4.3.2.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가 저지른 의도적 허위진술의 심각성과, 타 피의자의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처하기 위해 피의자가 제공한 실질적인 도움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즉, (i)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및 (ii) 자발적 인정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의 3/4을 초과하여 유예될 수 없다.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이 영구 자격정지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에 대한 유예 기간은 8년 미만이어야 한다.

8.4.3.3.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가 권리침해 금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8.4.3.4.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의 유예에

7) 제8.4.3.1목에 대한 주석: 제공된 실질적인 도움은 다른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서의 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의도적 허위진술 조사에 적용될 수 있다.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을 복원해야 한다. 국제연맹(협회)이 자격정지 기간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결정을 피의자,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결정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항소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하기 제10조 참조). 단, 해당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그 결정과 관련된 전체 조사 파일의 사본(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조사 파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포함)을 이전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사 파일의 사본(모든 번역본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전체 조사 파일(및 모든 필요한 번역본들)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8.5. 자격정지 기간 중 (등급)상태

8.5.1.8) 자격정지 기간 동안 피의자는 어떤 자격으로도 아래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8.5.1.1. 등급분류

8.5.1.2. 다음의 기관들에 의해 조직, 승인 또는 인정된 모든 시합, 이벤트, 프로그램 또는 기타 활동(공인된 교육 프로그램 제외): (a) 국제패럴림픽위원회, (b) 모든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된 국제연맹(협회) 또는 해당 개별 회원들, (c) 모든 클럽 또는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된 국제연맹(협회)의 기타 회원, 및/또는 (d) 모든 프로 장애인 스포츠 리그 또는 국제 또는 국가 수준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 조직.

8.5.1.3.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엘리트 또는 국가 수준의 스포츠 활동.

8.5.2. 피의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모든 관련 의도적 허위진술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8) 제8.5.1호에 대한 주석: 예를 들어, 자격정지된 피의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등급분류 및 이에 적용되는 모든 대회에 대한 참가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소속 국가연맹(협회)이 주최하는 훈련 캠프 및 전시회 또는 연습에도 참가할 수 없다(다만 하기의 제8.5.3호의 예외 기간은 제외로 한다). "활동"이라는 용어에는 예를 들어 소속 국가연맹(협회)의 임원, 이사, 책임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행정 활동도 포함된다. 한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된 국제연맹(협회)이 부과한 자격정지는 다른 모든 국제연맹(협회) 및 공인된 국제연맹(협회)에서도 인정된다(제8.2.6호 참조). 자격정지 상태인 피의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격으로 코치 또는 선수 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달성한 모든 성과 기준은 어떤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8.5.3. 제8.5.1.2목의 예외로, 선수는 다음의 두 가지 기간들 중 짧은 기간 동안은 팀과 함께 훈련하거나 제8.5.1.2목(c)에 나열된 국가연맹(협회) 또는 조직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복귀할 수 있다: (i)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ii)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 8.5.4. 제8.5.3호에 따라, 피의자 자신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한 모든 성적은 실격 처리되며,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한 길이의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피의자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국제연맹(협회)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원래의 자격정지 기간에 연결되어 가산된다. 이러한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피의자,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즉시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결정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항소 기관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하기 제10조 참조). 단, 해당 국제패럴림픽 위원회가 그 결정과 관련된 전체 조사 파일의 사본(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조사 파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포함)을 이전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사 파일의 사본(모든 번역본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제패럴림픽 위원회는 전체 조사 파일(및 모든 필요한 번역본들)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 팀 및 국가연맹(협회) 에 대한 후속조치

- 8.6.1.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소속된 팀에 적용되는 모든 후속조치는 국제연맹(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8.6.2.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소속된 국가연맹(협회)에 적용되는 모든 후속조치는 국제연맹(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9. 결정 (Decisions)

- 9.1. 일차 심의 기구는 절차 규정에 따라 서면 결정문으로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은 최소한 다음 문제를 다루고 결정해야 한다:
 - 9.1.1.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했는지 여부, 그러한 판단의 사실적 근거,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국제연맹(협회) 규정의 구체적인 조항
 - 9.1.2. 일차 심의 기구가 부과한 제재들
- 9.2. 국제연맹(협회)은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을 피의자,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개한다.
- 9.3. 국제연맹(협회)은 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다른 장애인 스포츠 종목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른 관련 국제연맹(협회) 또는 공인된 국제연맹(협회)에도 결정문을 발송한다 (제10조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포함).

- 9.4. 제6.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제9.1항에 언급된 사안을 다루는 서면 결정문을 작성하여 최소한 피의자, 피의자의 국가연맹(협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iv) 제9.3항에 언급된 모든 조직에 제공하며, 이는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의 최종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대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맹(협회)은 부과할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0. 항소 (Appeals)
- 10.1.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연맹(협회) 및 피의자는 각각 항소 당사자가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이 지정한 항소 기구에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을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단,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일차 심의 기구의 이전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당사자가 아닐 경우, 결정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에 관한 전체 사건 파일의 사본(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조사 파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전체 사건 파일(및 모든 필요한 번역본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0.2. 항소 당사자들에게는 최소한 제10.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항소 기구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공정한 청문회(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를 제공해야 한다.
- 10.3. 일차 심의 기구의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항소 주관 기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0.3.1. 국제연맹(협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독립적 운영되어야 함
- 10.3.2.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i) 해당 항소를 청문회 하기에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ii) 국제연맹(협회)의 일차 심의 기구 위원이 아니어야 함
- 10.4. 항소는 1인 또는 3인의 항소 기구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청문회 한다(3인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한 위원이 청문회 패널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항소 기구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항소 패널로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i) 현재 해당 국제연맹(협회)의 등급분류사일 경우, (ii) 해당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사실에 관여한 과거가 있는 경우, (iii) 기타 공정성 또는 독립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 10.5. 제10.6항에 따라 항소 기구는 해당 항소 기구의 절차 규정에 따라 항소를 청문회하고 결정한다.
- 10.6. 항소 기구의 절차적 규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0.6.1. 청문회가 새롭게 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즉, 항소 기구는 일차 심의 기구가 내린 법적 결론이나 가정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사건을 새롭게 청문할 것이다).
- 10.6.2. 제6.17항에 명시된 조항과 동등한 조항을 포함한다.
11. 공개 (Public Disclosure)

- 11.1.9) 제10.1항에 따른 항소 결정이 내려지거나, 항소가 면제되거나, 제6.13항에 따른 청문회가 면제되거나, 의도적 허위진술에 대한 혐의 제시에 시의 적절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6.10항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8.5.4호에 따라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 또는 견책이 부과된 후 21일 이내에 국제연맹(협회)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공개해야 한다:
- 11.1.1. 피의자의 신원, 관련된 의도적 허위진술의 내용 및 제재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처분 내용
 - 11.1.2. 피의자의 의도적 허위진술 지정과 함께 자격정지 기간 및 제재 발효일을 포함해서 등급분류 규약 제36조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들을 기술한 업데이트된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 11.2. 피의자의 국제연맹(협회)이 상기 제11.1항에 따른 사항들을 공개해야 할 경우, 해당 국제연맹(협회)은 그러한 판단 또는 결정의 서면 사유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국제연맹(협회)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편집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1.3. 청문회 또는 항소 후 피의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이 항소되었다는 사실은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결정 그 자체 및 제반 사실은, 결정의 대상인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 피의자의 국제연맹(협회)은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의를 얻은 경우 결정의 전체 또는 피의자가 승인할 수 있는 편집된 형태로 공개할 것이다.
- 11.4. 의도적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결정이 내려질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제11.1항에 명시된 의무 공개는 필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선택적 공개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부록 1: 정의 (DEFINITIONS)

등급분류 규약에 정의된 용어(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와 부록 1에 명시된 해석 규정이 국제표준에 적용된다. 국제표준과 관련된 추가 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공개 (Public Disclosure)는 최소한 국제연맹(협회)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그 정보를 전파 혹은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보를 한 달 이상 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도움 (Substantial Assistance)은 제8.4.3.1목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권리침해 금지 합의 (Without Prejudice Agreement)는 국제연맹(협회)과 피의자 간에 체결되는 서면

9) 제11.1항에 대한 주석: 본 조항에 따른 공개로 인해 다른 관련 법률에 대한 범법 사항이 같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을 경우 국제연맹(협회)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급분류 규약 또는 본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로서, 피의자가 정해진 시간제한 설정에서 국제연맹(협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실질적 도움(Substantial Assistance)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특정 합의에서 피의자가 제공한 정보는 국제연맹이 의도적 허위진술 절차에서 해당 피의자(또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는 이해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이 특정 합의에서 국제연맹이 제공한 정보는 피의자가 고의적 허위진술 절차에서 국제연맹(협회)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는 국제연맹이나 피의자가 합의에서 정의된 특정 시간 제한 설정 외의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

p109~116

IPC CLASSIFICATION CODE &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1 JANUARY 2025)

목차

1. 목적 (Purpose)	129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	129
3.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 원칙 (Principles for Processing Classification Data)	129
4.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Lawful grounds for Processing Classification Data)	130
5. 등급분류 연구를 위한 절차 (Processing for Classification Research)	130
6.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 (Notification to Athletes and others)	131
7. 등급분류 데이터 보안 (Classification data security)	131
8. 등급분류 데이터 공개 (Disclosure of Classification Data)	132
9. 등급분류 데이터 보관 (Retaining Classification Data)	132
10. 등급분류 데이터 관련 권리 (Rights relating to Classification Data)	133
부록 1: 정의 (DEFINITIONS)	134

1. 목적 (Purpose)
 - 1.1. 등급분류 규약은 등급분류 기구가 선수, 선수지원인력, 등급분류 인력 및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기타 개인의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본 국제표준)의 목적은 등급분류 기구가 등급분류 규약과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에 따라 일관되게 등급분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
 - 2.1. 본 국제표준은 등급분류 기구가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기준을 제시한다. 등급분류 기구는 최소한 본 국제표준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 원칙 (Principles for Processing Classification Data)
 - 3.1. 등급분류 기구가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기저 건강상태 평가, 적격 장애 평가, 최소장애기준 평가, 스포츠 등급 평가, 평가 세션, 징계 절차 수행, 항의 및 항소 해결, 등급분류 관련 정보 사용 또는 공유,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포함한 등급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과 등급분류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 3.2. 등급분류 기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등급분류 데이터만 수집해야 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등급분류 데이터는 삭제, 파기 또는 익명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3.1)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3.1.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를 유지할 것
 - 3.3.2. 관련 개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지 등을 통해 명확한 방식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
 - 3.3.3. 등급분류와 관련된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관련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추가 처리하지 않을 것
 - 3.3.4. 등급분류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등급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제한된 데이터일 것

1) 제3.3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정한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등급분류 데이터가 올바르게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용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관련 없는 추가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삭제, 파기 또는 영구적으로 익명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관련 개인이 자신들의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에 대해 특정 또는 일반 정보 통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4.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Lawful grounds for Processing Classification Data)
 - 4.1.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에 대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각 처리 작업이 유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처리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2.2)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처리가 (i) 등급분류 기구의 정당한 이익을 증진시키며, 그 이익이 관련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ii) 개인의 고지에 입각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iii)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 지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또는 (iv)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등급분류 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지 여부
 - 4.3.3) 등급분류 기구가 특정 등급분류 데이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개인이 나이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개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5. 등급분류 연구를 위한 절차 (Processing for Classification Research)
 - 5.1.4)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급분류 기구는 이러한 처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유효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선수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나 등급분류 기구가 관련 데이터 보호법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법적 근거일 수 있다.
 - 5.2. 연구 목적으로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급분류 기구는 추가로 모든 적용 가능한 윤리적 사용 및 연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등급분류 기구는 관련 선수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신하여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등급분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5.3. 연구 목적의 정의에 따라, 연구 목적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 포함)는 개인의 등급분류와 해당 개인에게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5.4. 등급분류 기구가 연구 목적을 위해 처리된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자료는

2) 제4.2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규약에 따라 요구되며 등급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근거는 등급분류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데이터 보호법, 스포츠법 또는 기타 법률이 그러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이 경우 데이터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거나 스포츠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할 수 있음) 및 처리와 관련된 기타 상황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제 4.3항에 대한 주석: 적용 법률에 따라 선수가 미성년자이고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 보호자, 또는 선수가 속한 대표단의 일원 같은 다른 대표자(선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와 같이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선수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다.

4) 제5.1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연구는 스포츠에서의 등급분류 체계 발전에 필수적이며, 선수들은 이 목적을 위해 종종 등급분류 기구에 등급분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는다. 등급분류 연구를 수행하는 등급분류 기구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 동의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해당 등급분류 기구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은 등급분류 연구와 관련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등급분류 기구는 관련 선수들에게 등급분류 연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익명화된 데이터만 포함되며 선수들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만약 공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등급분류 기구는 해당 선수로부터 해당 공개 이전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 (Notification to Athletes and others)
 - 6.1.⁵⁾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게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공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6.1.1. 등급분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급분류 기구의 신원과,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급분류 기구 내 적절한 연락처
 - 6.1.2. 수집 및 처리되는 등급분류 데이터의 유형과, 등급분류 데이터가 처리되는 목적(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모든 목적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포함)
 - 6.1.3. 등급분류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는 제 3자 유형(예 다른 등급분류 기구, 국가/국제 스포츠 연맹(협회) 등)
 - 6.1.4. 제10조에 따른 등급분류 데이터에 관한 개인의 권리
 - 6.1.5. 제9.2항에 따라 문서화된, 등급분류 데이터가 등급분류 기구에 의해 보관될 예상 기간.
 - 6.2.⁶⁾ 등급분류 기구는 제6.1항에 명시된 정보를 개인으로부터 등급분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또는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6.3. 제 3자로부터 등급분류 데이터를 받는 등급분류 기구는 제6.1조에 명시된 정보를, 다른 등급분류 기구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처럼 선수나 다른 개인이 이미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한다.

7. 등급분류 데이터 보안 (Classification data security)

7.1. 등급분류 기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7.1.1.⁷⁾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 5) 제6.1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 처리의 대상이 되는 선수와 기타 개인들에게 그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공개 사항은 최소 기준을 나타내며, 등급분류 기구는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6) 제6.2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선수를 비롯한 다른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통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또는 등급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과 템플릿에 포함된 언어를 통한 공지의 양식일 수 있다. 등급분류 기구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서면으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등급분류 기구는 그러한 통지를 받는 개인의 연령과 정신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7) 제7.1.1호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또는 내부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등급분류 데이터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보안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때,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맥락과 보안 침해가 관련 개인에게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등급분류 기구는 접근 및 인증 제어(예: 복잡한 비밀번호, 비밀번호 관리자, 역할 기반 접근)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등급분류 데이터의 손실, 도난 또는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및 기타 조치가 포함된다.

7.1.2.8) 처리를 위해 등급분류 데이터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본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급분류 기구를 대신하여 또는 지시에 따라 등급분류 기구가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적절한 계약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8. 등급분류 데이터 공개 (Disclosure of Classification Data)

8.1.9)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에서 예상되는 처리 활동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국제패럴림픽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등급분류 기구에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8.2. 등급분류 기구는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허용되고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른 당사자에게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8.3.10)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기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당국과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9. 등급분류 데이터 보관 (Retaining Classification Data)

9.1.11)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가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등급분류 기구가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그 외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급분류 데이터는 삭제, 파괴 또는 영구적으로 익명화되어야 한다.

9.2.12) 등급분류 기구는 처리하는 등급분류 데이터의 다양한 범주와 목적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소프트웨어(예: 악성 소프트웨어/스파이웨어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내부 시스템과 휴대용 장치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암호화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하드 카피 형식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취약점과 침해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정책과 절차도 등급분류 기구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8) 제7.1.2호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제3자에게 처리 작업을 위탁할 때 최종 책임을 지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만을 이용하여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제3자가 등급분류 기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등급분류 데이터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며, 등급분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안 침해의 발생시 즉시 통보하고, 기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제8.1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경기와 관련된 경우 등에서, 등급분류 절차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의도적 허위진술 사례 또는 의심 사례 등과 관련하여), 그리고 등급분류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패럴림픽 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등급분류 기구에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10) 제8.3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가 법에 의해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본 국제표준에 따라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11) 제9.1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규약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한 기간 동안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12) 제9.2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처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등급분류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보관 기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이나 절차에 반영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 선수 또는 전직 선수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범주의 등급분류 데이터를 선수의 은퇴 후에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 등급분류 기구가 선수가 시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나, 등급분류 데이터가 조사나 징계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별 등급분류사의 경우, 등급분류 기구는 해당 등급분류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처리한 등급분류 데이터가 더 이상 해당 선수의 등급분류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급분류사가 이를 보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중 생성하거나 작성한 메모, 설명, 비디오 녹화,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예: 개인 노트북 또는 기타 저장 장치)가

적절한 보관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0. 등급분류 데이터 관련 권리 (Rights relating to Classification Data)

10.1.¹³⁾ 개인은 등급분류 기구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10.1.1. 해당 등급분류 기구가 그들과 관련된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제6.1항에 명시된 정보의 공개

10.1.2. 등급분류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관련된 등급분류 데이터의 사본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10.1.3. 등급분류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관련된 등급분류 데이터의 수정 또는 삭제

10.2. 등급분류 기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응답해야 하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및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특정 기한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한다.

10.3.¹⁴⁾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절차의 진실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거나 등급분류 기구가 등급분류 규약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0.4. 데이터 보호법은 제10.1항에서 발생하는 권리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 권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기구는 법률에 존재하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포함된다.

13) 제10.1항에 대한 주석: 등급분류 기구는 자신들이 처리하는 등급분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선수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등급분류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 접근하려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14) 제10.3항에 대한 주석: 특정 상황, 예를 들어 해당 요청이 선수의 의도적 허위진술과 관련된 조사 및 정보 수집 또는 징계 절차 등 장애인 스포츠의 진실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경우, 등급분류 기구는 등급분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특정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요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반복적이거나 남용적인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부록 1: 정의 (DEFINITIONS))

등급분류 규약에 정의된 용어(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와 부록 1에 명시된 해석 규정은 본 국제표준에 적용된다. 본 국제표준에 특정하여 추가로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익명화된 데이터(Anonymised Data)란 데이터를 처리한 등급분류 기구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 의해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등급분류 데이터(Classification Data)란 선수, 선수지원인력, 기타 참여자, 등급분류 인력,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또는 등급분류나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처리된 등급분류와 관련된 기타 관련자와 연관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등급분류 기구(Classification Organisation)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를 포함하여 등급분류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거나 등급분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유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Laws)이란 등급분류 기구에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 및 규칙을 의미한다.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선수, 선수지원 인력, 기타 참여자, 등급분류 인력, 또는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개별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처리(Process(ing))란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저장, 사용 또는 공개를 의미한다.

연구 목적(Research Purposes)이란 등급분류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패럴림픽 운동 내 스포츠의 일반적인 개발과 완결성을 목표로 한 연구 행위를 의미한다.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란 관련 데이터 보호법 하에 건강과 관련이 있거나, 민감하거나 특별한 범주로 간주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